

【책임연구자】

고제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 저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아동수당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공저)

영유아 적정 가정양육비용 산출을 위한 통계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공저)

【공동연구진】

고경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연구보고서(수시) 2018-06

**아동수당 지급에 따른 영유아
보육서비스 이용 행태 분석**

발행일 2018년 12월
저자 고제이
발행인 조흥식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제8-142호)
인쇄처 (사)아름다운사람들복지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ISBN 978-89-6827-582-1 93330

발간사 <<

2018년 9월 21일은 한국 복지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아동수당제도의 출범일이다. 아동수당은 사회 구성원이 태어나면서부터 정부로부터 소득을 보장받는 형태의 현금 급여로 현대 복지국가의 핵심적인 정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지 2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0~5세 소득 하위 90%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적인 형태로 시행되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출발이었지만 시행 직후 보편적 사회수당의 형태로 아동수당의 대상 확대가 예정되었고 그 어떤 제도보다 빠르고 파격적인 제도 확대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아동수당 제도 시행 초기 정책 대상자의 행태 변화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정책 기능을 점검하고 제도 시행 전에 미처 파악하지 못한 다른 유관 제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 제도 설계의 기초 자료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2018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흥 식



목 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 내용 및 구성	13
제2장 북유럽의 아동수당 및 영유아 돌봄·보육 지원 제도 현황과 시사점 ..	15
제1절 아동수당제도	18
제2절 영유아 돌봄·보육 지원 제도	22
제3절 가정양육 및 보육료 지원 체계의 한계점 진단	27
제3장 부모 설문조사 개요	31
제1절 조사의 목적과 설계	33
제2절 응답자 가구 특성	37
제4장 아동수당 도입과 양육 행태에 관한 분석	47
제1절 아동수당 이용 행태	49
제2절 아동수당 수급이 자녀 양육 행태에 미친 영향	60
제5장 자녀 양육 지원 정책에 대한 부모 인식	69
제1절 아동수당제도의 개인적·사회적 영향에 관한 인식	71
제2절 아동수당 및 자녀 양육 지원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인식	80

제6장 아동수당 도입 전후 양육 행태와 정책 인식의 변화	87
제1절 아동수당제도 도입과 자녀 양육 행태의 변화	89
제2절 아동수당제도의 정책 영향에 관한 인식 변화	94
제3절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선호 변화와 변화 요인	97
제4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15
 참고문헌	 121
 부록	 123
부록 1. 회귀분석을 이용한 아동수당 도입 효과 분석 결과	123
부록 2. 한국의 휴직제도와 돌봄·보육 지원 제도 현황	124
부록 3. 어린이집 이용/가정양육수당 수급 부모 설문조사	131

표 목차

〈표 2-1〉 한국과 북유럽의 아동(가족)수당(2018년)	21
〈표 2-2〉 한국과 북유럽의 양육수당 및 보육 지원 제도(2018년)	26
〈표 2-3〉 아동 연령별 1인당 양육비용	27
〈표 3-1〉 2017년 설문조사 개요	34
〈표 3-2〉 2017년 조사 결과: 아동수당 도입으로 인한 양육 방식 변화 원인(소득 수준별)	34
〈표 3-3〉 2017년 조사 결과: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양육 행태 전환 비율	35
〈표 3-4〉 조사 설계	37
〈표 3-5〉 거주 지역 분포	38
〈표 3-6〉 가구소득 유형(맞벌이 여부)	40
〈표 3-7〉 월평균 가구소득	42
〈표 3-8〉 자녀 수	43
〈표 3-9〉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	44
〈표 3-10〉 어린이집을 이용 중이거나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만 0~5세 아동의 수	46
〈표 4-1〉 최연소 자녀의 양육 방식(가구소득 수준별)	50
〈표 4-2〉 아동수당(월 10만 원) 수급 여부(가구소득 수준별)	52
〈표 4-3〉 아동수당의 활용(가구소득 수준별)	54
〈표 4-4〉 아동수당의 활용(성남시 거주 여부별)	55
〈표 4-5〉 아동수당 신청 과정의 편리함(가구소득 수준별)	56
〈표 4-6〉 아동수당 신청의 경제적·정신적 부담 비용(가구소득 수준별)	59
〈표 4-7〉 아동수당이 자녀 양육 방식에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가구소득 수준별)	61
〈표 4-8〉 아동수당이 자녀 양육 방식에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성남시 거주 여부별)	62
〈표 4-9〉 아동수당 도입이 자녀 양육 방식의 결정에 미친 영향(가구소득 수준별)	63
〈표 4-10〉 아동수당 도입이 자녀 양육 방식의 결정에 미친 영향(아동 연령대별)	64
〈표 4-11〉 가정양육수당 인상과 가정양육 전환(가구소득 수준별)	66
〈표 4-12〉 가정양육수당 인상과 가정양육 전환(맞벌이 여부별)	67
〈표 5-1〉 아동수당제도의 필요성(가구소득 수준별)	72

〈표 5-2〉 아동수당제도의 필요성(아동수당 수급 여부별)	73
〈표 5-3〉 아동수당의 자녀 양육 부담 완화 효과(가구소득 수준별)	74
〈표 5-4〉 아동수당의 자녀 양육 부담 완화 효과(성남시 거주 여부별)	74
〈표 5-5〉 아동수당의 미래 세대 투자 효과(가구소득 수준별)	76
〈표 5-6〉 선별 지급으로 인한 불편과 사회 갈등 발생(가구소득 수준별)	77
〈표 5-7〉 선별 지급으로 인한 불편과 사회 갈등 발생(아동수당 수급 여부별)	78
〈표 5-8〉 아동수당의 아이를 같이 키우는 사회 분위기 조성 효과(가구소득 수준별)	79
〈표 5-9〉 아동수당의 아이를 같이 키우는 사회 분위기 조성 효과(맞벌이 여부별)	80
〈표 5-10〉 아동수당 금액 인상에 대한 생각(가구소득 수준별)	82
〈표 5-11〉 출생 순위별 차등 지급에 대한 필요성(가구소득 수준별)	83
〈표 5-12〉 가정양육수당 금액 인상에 대한 생각(가구소득 수준별)	84
〈표 6-1〉 자녀 양육 방식에 아동수당이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	90
〈표 6-2〉 자녀 양육 방식 결정에 아동수당이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 (아동 연령 만 0~2세 가구로 제한)	91
〈표 6-3〉 아동수당이 자녀 양육 방식의 결정에 미친 영향	92
〈표 6-4〉 아동수당이 자녀 양육 방식의 결정에 미친 영향(아동 연령 만 0~2세 가구로 제한)	92
〈표 6-5〉 아동수당 수급 가구의 양육 방식 전환 비율	93
〈표 6-6〉 아동수당이 자녀 양육 부담 완화에 미친 영향	94
〈표 6-7〉 아동수당이 자녀 양육 부담 완화에 미친 영향(아동 연령 만 0~2세 가구로 제한)	95
〈표 6-8〉 아동수당이 자녀 출산 결정이나 계획에 미친 긍정적 영향	96
〈표 6-9〉 아동수당이 자녀 출산 결정이나 계획에 미친 긍정적 영향 (아동 연령 만 0~2세 가구로 제한)	96
〈표 6-10〉 출생 순위별 차등 지원의 필요성	97
〈표 6-11〉 출생 순위별 차등 지원의 필요성(아동 연령 만 0~2세 가구로 제한)	98
〈표 6-12〉 2017년 당시 보육 지원 체계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추적 가구 대상)	98
〈표 6-13〉 2018년 보육 지원 체계 개선 관련 조사 결과(추적 가구 대상)	99
〈표 6-14〉 가정양육수당 인상(2017년 1순위 응답 가구 기준)	100

〈표 6-15〉 가정양육수당 인상에 대한 선호 변화와 양육 행태 분포의 변화 (2017년 1순위 응답 가구 기준)	101
〈표 6-16〉 가정양육수당 인상에 대한 선호 변화와 자녀 수 분포의 변화 (2017년 1순위 응답 가구 기준)	102
〈표 6-17〉 가정양육수당 인상에 대한 선호 변화와 소득 분포의 변화 (2017년 1순위 응답 가구 기준)	103
〈표 6-18〉 가정양육수당 인상에 대한 선호 변화와 소득 유형 분포의 변화 (2017년 1순위 응답 가구 기준)	104
〈표 6-19〉 육아휴직자 어린이집 이용 제한(2017년 1순위 응답 가구 기준)	105
〈표 6-20〉 육아휴직자 어린이집 이용 제한에 대한 선호 변화와 양육 행태 분포의 변화 (2017년 1순위 응답 가구 기준)	106
〈표 6-21〉 육아휴직자 어린이집 이용 제한에 대한 선호 변화와 자녀 수 분포의 변화 (2017년 1순위 응답 가구 기준)	107
〈표 6-22〉 육아휴직자 어린이집 이용 제한에 대한 선호 변화와 소득 분포의 변화 (2017년 1순위 응답 가구 기준)	108
〈표 6-23〉 육아휴직자 어린이집 이용 제한에 대한 선호 변화와 소득 유형 분포의 변화 (2017년 1순위 응답 가구 기준)	109
〈표 6-24〉 부모에게 시설보육료 직접 지급(2017년 1순위 응답 가구 기준)	110
〈표 6-25〉 부모에게 시설보육료를 직접 지급하는 것에 대한 선호 변화와 양육 행태 분포의 변화(2017년 1순위 응답 가구 기준)	111
〈표 6-26〉 시설보육료 직접 지급에 대한 선호 변화와 자녀 수 분포의 변화 (2017년 1순위 응답 가구 기준)	112
〈표 6-27〉 시설보육료 직접 지급에 대한 선호 변화와 소득 분포의 변화 (2017년 1순위 응답 가구 기준)	113
〈표 6-28〉 시설보육료 직접 지급에 대한 선호 변화와 소득 유형 분포의 변화 (2017년 1순위 응답 가구 기준)	114
〈표 6-29〉 2019년도 시설 기반 보육·교육 및 가정양육 지원 단가 비교	116
〈표 6-30〉 2017년도 전환 비용 추계 결과(아동수당 10 도입, 만 0~5세 국비+지방비 합계) ..	117

〈부표 1-1〉 아동수당 도입 효과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123
〈부표 2-1〉 휴직제도 현황	126
〈부표 2-2〉 가정양육수당 지원 연혁(2009년~현재)	128

그림 목차

[그림 3-1] 가구원 수	39
[그림 3-2] 가구소득 유형(맞벌이 여부)	39
[그림 3-3] 월평균 가구소득	41
[그림 3-4] 월평균 자녀 양육비(최연소 자녀 1명 기준)	45
[그림 4-1] 자녀 양육 방식(최연소 자녀 기준)	49
[그림 4-2] 아동수당(월 10만 원) 지급 여부	51
[그림 4-3] 아동수당(월 10만 원) 지급자 수	52
[그림 4-4] 아동수당(월 10만 원)의 활용	53
[그림 4-5] 아동수당 신청 과정의 편리함	56
[그림 4-6]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이유	57
[그림 4-7] 아동수당 신청이 불편한 이유	58
[그림 4-8] 아동수당이 자녀 양육 방식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60
[그림 4-9] 아동수당 도입이 자녀 양육 방식의 결정에 미친 영향	62
[그림 4-10] 가정양육수당 인상과 가정양육 의향	65
[그림 5-1] 아동수당제도의 필요성	71
[그림 5-2] 아동수당의 자녀 양육 부담 완화 효과	73
[그림 5-3] 아동수당의 미래 세대 투자 효과	75
[그림 5-4] 선별 지급으로 인한 불편과 사회 갈등 발생	76
[그림 5-5] 아동수당의 아이를 같이 키우는 사회 분위기 조성 효과	78
[그림 5-6]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대한 생각	81
[그림 5-7] 아동수당 금액 인상에 대한 생각	81
[그림 5-8] 출생 순위별 차등 지급에 대한 생각	83
[그림 5-9] 가정양육수당 금액 인상에 대한 생각	84
[그림 5-10] 육아휴직자의 어린이집 이용 제한에 대한 생각	85
[그림 5-11] 시설보육료 지원금을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대한 생각	85



Abstract <<

Child benefit and parental decision making about the form of child care

Project Head: Ko, Jayee

The first payment of child benefit is paid out to young parents with children under age 6 in September last year.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child benefit on parental decision making about the form of child care(home care or formal daycare) in the context of universal child care policy framework. By focusing on the research question, which has yet to be given much attention in the policy discussions, this study is organized as follows. Chapter 2 reviews family policies in Korea and four Nordic countries, Denmark, Finland, Norway, and Sweden. Chapters 3 to 5 examine survey results collected from two parent surveys on family policy and their responding behavior. Chapter 6 measures the combined effect of child benefit and the universal child care policy by estimating additional fiscal burden may arise as parents alter their decision about the form of child care.

Co-Researchers: Ko, Kyungpyo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8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아동수당제도는 미래 세대에 대한 사회적 투자 관점에서 자녀 양육 방식(가정양육 또는 시설 보육)과 무관하게 자녀 양육 가구에 직접적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현금 급여이다. 현재 가정양육과 보육료 지원으로 구분되어 차별적인 지원 단가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보육 지원 제도가 동일한 정책 연령 집단에 대해 동시에 작용할 때에 부모들의 양육 방식 선택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 것인가는 정책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는 2017년 아동수당제도 도입 전 조사된 바 있는 영아 양육 부모들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제도 시행 후 자녀 양육 행태에 변화가 있는가를 점검하고 아동수당제도의 시행 초기 영향을 파악하여 체계적인 자녀 출산·양육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주요 연구 결과 및 시사점

아동수당 수급 가구들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전체의 절반 이상(55.5%)이 전액 자녀 양육 비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동수당 신청에 따른 경제적·정신적 비용에 대한 설문 결과, 무응답 가구를 제외한 가구 중 87.9%가 10만 원 이하라고 응답하였다. 소득 수준이나 아동수당 수급 여부에 따른 응답 금액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인되지 않았으며, 중위 금액은 1만

4 아동수당 지급에 따른 영유아 보육서비스 이용 행태 분석

5000원, 평균 금액은 7만 8898원으로 나타났다. 아동수당제도의 필요성 및 긍정적 인식 정도를 물어본 결과, 응답 가구의 91.0%가 아동수당제도의 필요성이 높다고 보았다. 아동수당의 자녀 양육 부담 완화 효과에 대해서는 전체 조사 가구의 62.8%가 그 완화 효과가 높거나 매우 높다고 응답하였다. 아동수당 도입 전 조사된 바 있는 가구에 대한 추적 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실제 수급 부모들의 자녀 양육 부담 완화에 대한 체감이 기대한 것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예상했던 대로 선별 지급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은 미수급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확인되었다. 자녀 출산과 양육에 관한 부담의 사회화와 관련해서는 이제 막 출범한 아동수당제도의 기능이 다소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자녀 출산과 돌봄·양육에 대해 정책적인 숙고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수당 도입이 자녀를 돌보는 방식에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 89.3%의 가구가 영향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10.7%만 영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 방식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정책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된 가정양육수당 지원 단가 체계와 맞물려 영아기의 불필요한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문턱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도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양육 방식 전환 의사에 대한 분석 결과, 저소득층의 경우 가정양육으로 전환하거나 유지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반면에 고소득층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 전환 또는 유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확인된 사실은 관련 제도 간의 적절한 조율이 시급함을 강조한다.

제도 간의 조율 방안 검토와 관련하여 현행 보육 체계에 필요한 개선 과제를 확인한 결과, 가정양육수당 인상과 현재 공급자에게 지급되는 보육료 지원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가 지난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높게 나타났다. 가정양육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가정양육수당 단가 인상에 관한 설문 결과, 자녀 양육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이 큰 맞벌이 가구나 고소득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인상액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양육수당 인상 금액 수준에 따라 반응하는 가구 집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으로, 그 결과 노동 공급이나 아동 발달 등 다차원적인 측면에서의 중장기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체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동수당제도와 관련해서는 응답 가구 대부분이 아동수당 지급 연령과 금액의 확대를 중요한 개선 과제로 여겼으며, 자녀 출산과 관련한 유인 체계를 부가한다면,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는 급여 체계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반적으로 조사 가구들의 아동수당제도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동시에 몇 가지 보완점이 요구된다. 특히 보육서비스의 이용 행태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아동수당 제도는 물론 가정양육수당-보육료 지원 단가 체계의 조정이나 보육료 지원 대상의 변화 등과 같은 보육 체계 전반에 걸친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별개의 정책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라 하여도 동일한 정책 집단에 각각의 영향을 미칠 때, 하나의 제도 또는 제도들에 대한 조정에 있어서는 개별 제도의 효과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영향까지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설문조사에 근거한 단편적인 분석을 통해서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실증 자료의 확보와 다차원적인 영향 경로를 고려한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되는 것으로, 지속적인 연구 노력과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사안이다.

*주요 용어: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보육 체계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구성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018년 9월 21일 첫 번째 아동수당이 지급됨에 따라 한국의 가족정책은 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3대 지원 체계(소득·소비·시간)의 틀을 완성하였다. 자녀 출산과 양육에 따른 소득 감소 위험에 일반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사회 초년생 부모들에 대한 보편적 지원 제도의 출발이라는 점에서 아동수당의 지급은 큰 의미를 갖는다. 물론 현행 아동수당제도의 지급 대상이 영유아 자녀 양육 가구에 한정된다는 점은 현대 복지국가의 아동수당제도가 통상 취업 전 연령(최소 만 15세~학생인 경우 24세까지)까지 포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한편, 한국 가족정책이 유럽 복지국가의 경험과 차이를 보이는 점은 이들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아동수당이 먼저 제도화된 이후에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일·가정 양립 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보육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한국은 이와 정반대의 경로를 보인다는 점이다. 후발 복지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현재 그 어떤 복지국가들보다 확대된 보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만 3세 미만의 영아 보육에 있어 일반적으로 만 1세 이상부터 공보육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아이에게 주어지지만,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부담은 부모와 사회가 분담하는 유럽 국가들과 달리 한국은 2013년부터 전국의 모든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무상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만 0~2세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2017년 12월 말 기준 만

0세 아동이 18.5%, 만 1세와 만 2세 아동이 각각 74.1%와 89.1%로 평균 52.6%를 기록하였다(육아정책연구소, 2018). 국제 비교가 가능한 OECD Family Database의 최근 자료를 통해 보면 2016년 기준 한국의 영아 보육시설 이용률은 53.4%로 OECD 회원국 중 덴마크(61.8%), 벨기에(59.8%), 아이슬란드(59.7%), 프랑스(56.7%), 이스라엘(56.3%), 네덜란드(55.9%), 노르웨이(55.3%) 다음으로 높았고 OECD 평균인 33.2%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OECD, 2018).

반면에 자녀를 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14년 기준 83.1%에 이르고 세계 최고 수준의 공보육시스템을 갖춘 스웨덴의 경우, 영아 보육시설 이용률은 한국보다 낮은 46.5%로 나타났고, 핀란드는 이보다 낮은 30.5%로 확인된다. 한국의 경우 공식적인 유자녀 여성의 고용 통계가 발표되고 있지 않아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지만, 여성 고용률이 2017년 기준 56.9%로 OECD 평균 64.9%보다 낮고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미달하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영아 보육시설 이용률은 이론적으로 높은 수준이라 하겠다(OECD, 2018).

이것은 물론 자영업과 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이 높은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로 일부 설명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민간 보육서비스 공급자 기반으로 제공되는 영아 보육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정부가 그 비용을 공급자에게 전액 지원하는 방식의 무상보육 체계에 큰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부모들은 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인식하지 못하는 한편,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자녀를 키울 경우 지급되는 가정양육수당 금액은 8년째 고정되어 현실적인 양육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실질가치가 낮아짐에 따라 부모들의 불필요한 보육시설 이용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가정양육수당은 생후 최대 84개월 미만까지의 아동을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시설 기반 보육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을 조건으로, 아동 연령에 따라 월 10만~20만 원의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2009년 7월 도입된 이 제도는 정책적으로 시설 보육이 아닌 가정에서의 자녀 양육을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데, 도입 당시에는 취약한 보육시설 인프라로 인한 시설 이용의 불형평성 문제를 완화하는 것에 주목적이 있었다.

2013년 1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무상보육·교육이 시행된 것을 계기로 민간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한 공급 체계가 빠르게 확장되면서 보육료 지원 단가는 꾸준히 인상되어 왔다. 반면에 가정양육수당 지원 단가는 2013년 기준 금액에 고정하는 대신 2016년부터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에 대해 월 80시간까지의 시간제 보육서비스(보육료 단가 시간당 4000원: 정부 지원 3000원+본인 부담 1000원)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보면 자녀 양육 방식에 대한 부모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책 기능은 실질적으로 위축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2013년 무상보육 시행 이후 가정양육수당 단가 체계의 조정이 없는 상태에서 영아(특히 1~2세) 시설 이용률은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 아직까지 부모들의 양육 방식 선택에 대한 제도의 영향을 적절히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다만 가정양육수당이 불필요한 보육시설 이용을 일부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연구 결과들을 찾아 볼 수 있었다. 먼저 서문희, 이혜민(2013)은 2013년 3월 기준 0세와 1세 보육시설 이용률이 동년 1월 대비 각각 6.2%포인트와 11.1%포인트 하락하게 된 주요 원인을 가정양육수당 지원 제도의 전면 확대 시행에 따른 것으로 파악하였다. 김송이, 이혜숙(2014)과 유해미, 강은진, 조아라(2015)의 관련 부모 설문조사 결과에서

는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되기 때문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이 적게는 10% 내외에서 높게는 30% 수준까지 제시된 바 있다.¹⁾

가정양육수당이 부모의 자녀 양육 행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연구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지원 단가 수준에 따라 양육 행태가 바뀔 수 있다는 분석 결과들도 제시되었다. 또한 제도의 영향이 아동의 연령이나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예컨대 유해미 외(2015)에 따르면 영아보다는 3세 이상에서,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서 가정양육수당의 선호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에서 동일한 정책 연령 집단에 대하여 양육 행태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부모들의 양육 방식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를 파악하는 일은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다. 고제이, 고경표(2017)는 아동수당제도가 도입되기 전 영유아 부모 1021명을 대상으로 아동수당 지급이 이원화된 보육 체계와 결합되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를 사전적으로 조사한 바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26.2%가 가정양육수당 인상 없이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될 경우 불필요한 시설 이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2017년의 후속 조사를 통해 실제 아동수당을 수급한 가구의 자녀 양육 행태를 점검하고 2019년부터 전 소득계층만 7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 지급될 예정에 있는 아동수당제도의 시행 초기의 영향을 검토하여 향후 체계적인 자녀 출산·양육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자 한다.

1) 김송이, 이혜숙(2014, p. 104): 8.4~13.6%, 유해미 외(2015, p. 152): 30.4%

제2절 연구 내용 및 구성

상기 연구 목적을 위하여 제2장에서는 한국과 유사하게 가정 내 부모 돌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3개국의 관련 제도를 한국과 비교하여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본다.

제3장은 아동수당제도 도입 초기 부모의 양육 방식 선택에 대한 정책 영향과 자녀 양육 지원 정책에 대한 부모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부모 대상 설문조사의 목적과 설계 구조를 설명한다. 제4장과 제5장은 전체 조사 집단을 기준으로 조사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결과를 살펴본다. 제6장은 2017년 연구에서 조사된 바 있는 재조사 가구를 기준으로 아동수당제도 전후 자녀 양육 행태와 정책 인식에 대한 변화와 변화 요인을 심층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보편적 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수당 성격의 아동수당제도 시행이 부모의 자녀 양육 방식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보육 지원 제도와 결합되어 제공되는 정책적 유인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재정 영향을 시산한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고 바람직한 자녀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합리적 자녀 출산·양육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정책 조율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갈음한다.



제 2 장

북유럽의 아동수당 및 영유아 돌봄·보육 지원 제도 현황과 시사점

제1절 아동수당제도

제2절 영유아 돌봄·보육 지원 제도

제3절 가정양육 및 보육료 지원 체계의 한계점 진단



2

북유럽의 아동수당 및 영유아 돌봄·보육 지원 제도 현황과 시사점

복지국가의 가족정책에서 영유아 아동 양육과 관련해서 핵심이 되는 제도는 크게 아동 개인이나 이들을 직접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 소득 보장(아동수당/가족수당)과 부모의 직접 돌봄에 대한 시간 보조(휴직제도), 돌봄·보육서비스라 할 수 있다. 아동 돌봄·보육의 경우 가정 내 양육에 대한 지원과 공보육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제3자 돌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이원화된 돌봄·보육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으면서 아동수당제도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의 관련 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아보기로 한다.

자료의 출처는 자료의 최신성, 다양성, 신뢰성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Mutual Information System on Social Protection(이하 MISSOC)의 Comparative Table Database(MISSOC, 2018)이다. MISSOC는 EU 회원국들의 사회보장에 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교환하기 위해 1990년에 설립된 기관이며, MISSOC의 데이터베이스는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 28개 EU 회원국, 노르웨이 등 EEA 3개국, 스위스의 사회보장 관련 정보를 축적하고 있다. 특히 MISSOC(2018)은 이들 국가들의 사회보장법 관련 정보와 각종 수당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 전문가,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²⁾

2) 이 외에도 해외 사회보장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주요 자료원으로 미국 사회보장사무국(U.S.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서 발간하는 보고서인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를 꼽을 수 있다. 해당 보고서는 유럽 외에도 아시아, 아메리카 등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사회보장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조사 범위가 매우 넓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http://www.ssa.gov>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

제1절 아동수당제도

1. 기본 원리와 적용 범위

2018년 기준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4개국의 아동수당제도(child benefit)는 조세를 재원으로 일정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사회수당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³⁾ 아동수당의 설계에 있어서는 다소간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한국의 경우 현재까지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의 균등한 단일수당제도로 운영되는 반면에, 북유럽 국가는 모두 기본적인 아동수당(덴마크의 경우 연령 차등)에 자녀 연령(덴마크, 노르웨이)이나 자녀 수(스웨덴, 덴마크), 한부모가구(핀란드, 덴마크) 등 가구 특성을 고려한 부가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자국 거주를 조건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세부적으로는 미세한 차이만 있는데, 핀란드는 자국에 거주하는 모든 부모나 보호자에게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모든 시민이 적용 대상이다. 한편, 덴마크는 일정 기간 이상 덴마크에 거주하고 납세 이력이 있는 경우로 적용 범위를 다소 제한하고 있다. 스웨덴은 급여를 수급 중인 아동이 타국(EU/EEA/스위스 제외)에 6개월 이상 나가 있을 경우 지급을 중단한다.

아동수당의 지급 아동 연령은 나라별로 차이가 있는데, 한국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16~18세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아동수당 지급을 18세 생일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며, 핀란드는 연령 제한을 17번째 생일로 두고 있다. 스웨덴은 기본적으로 16세까지로 제한하지만,

제이, 고경표, 2017, p. 39).

3) 아동수당의 영문 이름은 나라마다 child benefit, child allowance 등 다양한 형태로 번역되고 있다.

16세 이상 아동이 의무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연장아동수당(extended child allowance)을 지급한다.

2. 급여액과 자산 조사

덴마크의 아동수당은 아동청소년수당(child and youth benefit)과 아동수당(child allowance)으로 나뉜다. 아동청소년수당은 자녀의 연령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아동 1명당 급여액이 감소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부모 각각의 개인소득이 10만 2854유로를 초과할 경우 각 초과분의 2%를 수당에서 공제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에 반해 아동수당(child allowance)은 한부모이거나 연금을 수급 중인 경우, 쌍둥이 혹은 그 이상 다태아 출산인 경우, 학생부모, 미혼모,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 입양 가정인 경우에 한하여 추가 수당이 지원되는데, 이때 수당 금액은 가구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핀란드의 아동수당은 기본적으로 아동의 출생 순위에 따라 증가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에 부가하여 한부모가구에 대해서는 일정액을 추가로 보조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아동수당은 모든 대상 연령 아동에 대하여 동일한 기본수당을 지급하고, 0~3세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에 대하여 추가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노르웨이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금액을 모든 대상 연령 아동에게 지급하는 기본수당에 부가하여 대가족수당보조금(large family supplement)을 통해 자녀 출생 순위별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연장아동수당을 아동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다.

덴마크를 제외한 북유럽 3개국 모두 자산 조사 없이 가구소득과 무관

하게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 일부 고소득층에 한정하여 아동청소년수당이 감액되지만, 모든 아동이 태어나면서부터 기본적으로 수급권을 갖는다는 사실은 다른 북유럽 국가들과 다르지 않다. 이와 관련해서 특히 핀란드의 경우 제도적으로 아동이 만 15세가 되면 본인이 직접 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스웨덴의 경우 만 16세 이상이면 연장아동수당을 아동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동수당이 아동의 기본권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북유럽 국가들의 아동수당제도와 한국의 제도를 비교해 보면, 한국의 아동수당은 대상 아동의 포괄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급여 수준에 있어서는 모든 아동에 대해 균등한 금액을 지급하는 단일수당 체계로 북유럽 국가들의 기본수당 금액과 비교했을 때 결코 적지 않은 수준이나, 다른 부가급여까지 고려할 경우 상대적으로 과소하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이제 막 시행된 한국 아동수당제도의 특성에서 비롯된 당연한 차이로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지급 대상 아동 연령의 확대와 가구 특성을 고려한 추가 지원을 통해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을 보여 준다.

〈표 2-1〉 한국과 북유럽의 아동(가족)수당(2018년)

재원/과세 여부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자산 조사	-조세 -비과세 △ 아동청소년수당(The Child and Youth benefit): 고소득 가구에 한해, 부모 각각의 소득이 DKK 765,800(102,854유로)를 초과할 경우, 각 초과분의 2%를 수당에서 공제.	-조세 -비과세 x	-조세 -비과세 x	-조세 -비과세 x
대상 연령	18세 생일까지	17번째 생일까지	18세 생일까지	출생월부터 16세에 도달하는 분기까지 지급 16세 이상 아동이 의무교육 상태에 있는 경우, 아동수당 대신 연장아동수당(extended child allowance)을 지급
수당 체계	-기본+부가급여 -연령+소득 고려 -아동청소년수당(child and youth benefit) · 0~2세: 아동당 분기당 DKK 4,506(605유로) · 3~6세: 아동당 분기당 DKK 3,567(479유로) · 7~14세: 아동당 분기당 DKK 2,808(377유로) · 15~17세: 아동당 월 DKK 936(126유로) -아동수당(child allowance) · 한부모, 쌍둥이 이상 가구, 연금수급가구, 부모가 학생인 경우 등 특별한 경우 수료를 고려하여 지급 지급 금액은 상황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되며, 평균적으로 아동 1인당 분기별 DKK 1,358(182유로) = 월 DKK 453(61유로)	-기본+부가급여 -아동수당 첫째: 월 94,88유로 둘째: 월 104,84유로 셋째: 월 133,79유로 넷째: 월 153,24유로 다섯째 및 이후 자녀: 월 172,69유로 -한부모가구 추가 지원: 아동당 월 53,30유로	-기본+부가급여 -아동 1인당 월 NOK 970(98유로) 균일 수당 -0~3세 자녀를 가진 한부모에 대해 NOK 660(67유로) 지급	-기본+부가급여 · 월 SEK 1,050(108유로) · 다자녀 추가 수당(Large family supplement) *둘째: SEK 150(15유로) *셋째: SEK 730(75유로) *넷째: SEK 1,740(179유로) *다섯째 이후 아동당 SEK 1,250(129유로) 연장아동수당(extended child allowance): 아동에게 직접 지급
수당 금액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아동 1인당 월 172,69유로	아동 1인당 월 660(67유로)	아동 1인당 월 1,250(129유로)

주: * 한국의 경우 2018년 12월 아동수당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18. 12. 26.) 통과 내용 반영.
 자료: MISSOC (2018), Mutual Information System for Social Protection (MISSOC) Comparative Table Database (selected update: 2018-1-1), <http://www.missoc.org/missoc-database/comparative-tables>에서 2018. 10. 3. 인출.

제2절 영유아 돌봄·보육 지원 제도

1. 가정양육

이하에서는 공식적으로 가정 내 돌봄에 대한 현금 지원 정책을 운영하지 않는 스웨덴을 제외한 3개국을 대상으로 가정 내 양육에 대한 보조금 제도를 살펴본다.

덴마크의 가정양육에 대한 부모 보조금 제도는 자녀 양육보조금(subsidies for caring for own children, 이하 “양육수당”)과 사보육보조금(subsidies for private day-care scheme)이 대표적이다. 이 두 가지 부모에 대한 양육보조금제도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관리하며, 수급 가능 아동 연령 등을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다. 자녀 양육보조금은 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지자체의 공보육시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부모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사보육보조금도 마찬가지로 조세를 기반으로 하는 지원 제도로서 부모와 민간 돌봄 서비스 공급자 간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민간 보육서비스(private day care)를 이용하는 경우 보조하는 제도로서 부모에게 보조금이 직접 지급된다. 자녀 양육보조금과 사보육보조금 모두 생후 24주부터 의무교육 시작 연령대까지의 자녀가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부모의 고용 여부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공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선택적으로 지급된다. 최근 들어서 자녀 양육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이민자에 대한 지급 요건을 강화할 목적으로 최근 8년 동안 7년을 덴마크에 거주하였고 아동의 언어 발달과 관련해서 덴마크어에 능숙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2018년 현재 덴마크 자녀 양육보조금의 급여액은 지자체 보육시설 이용 아동 관련 경비의 85%를 한도로 결정된다.

사보육보조금 지원 수준은 (예산액이 가장 낮은) 보육시설의 순 운영 원가를 기준으로 최소 75%이고, 부모가 부담하는 실비의 75%를 초과할 수 없다.

핀란드도 마찬가지로 부모 휴직이 끝난 다음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보거나 사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만 3세 미만 자녀를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가 집에서 직접 돌보는 경우 가정양육수당(Child home care allowance)이 부모에게 직접 지급된다. 가정양육수당은 2018년 현재 대상 아동 1인당 월 기본수당 338.34유로가 지급되며,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이들의 연령에 따라 추가 수당이 주어진다. 추가 수당은 집에서 돌보는 자녀의 형제자매가 0~2세인 경우 월 101.29유로, 3~6세인 경우 65.09유로를 더하여 지급하고, 여기에 자산 조사 기반으로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181.07유로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 밖에도 부모의 돌봄에 대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유연근무양육수당(Flexible care allowance)과 부분양육수당(Partial care allowance)이 있다. 유연근무양육수당은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이면서 3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따라 월 160.80~241.19유로까지 지급된다. 부분양육수당은 1~2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 주당 근로시간을 30시간 미만으로 단축한 경우 월 96.89유로가 지급된다. 이들 유연근무양육수당과 부분양육수당은 가정양육수당과 달리 집에서 돌보는 자녀 수와 무관하게 돌봄 대상 아동 한 명에 대해서만(가구 단위) 지급된다. 부모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인 가정양육수당, 유연근무양육수당, 부분양육수당 모두 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으로 과세 당국에 의해 원천 징수된다. 한편, 공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대신 민간돌

봄·보육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공급자에게 사보육 지원금이 지급된다. 사보육 지원금은 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이용 시간 권리에 따라 달리 지급된다. 주당 20시간보다 많은 유아 교육권을 보장받은 아동에 대해서는 월 172.25유로가 공급자에게 지급되며, 보장 권리가 주당 20시간 이하인 경우엔 아동 1인당 월 63.38유로를 지급한다.

마지막으로 노르웨이 역시 한국의 가정양육수당과 유사한 형태로 부모의 직접 양육에 대한 보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양육수당(Cash for care)은 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부모에게 더 많은 자녀 돌봄 시간을 제공하고 양육 방식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1~2세 아동을 집에서 돌보는 부모, 보호자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한다. 양육수당 수급 요건으로는 수급자(부모, 보호자)와 아동 모두 노르웨이에 거주해야 하며, 2017년 7월 1일부터 수급자에 대해 최소 5년 이상 사회보험 가입 이력에 대한 조건이 추가되었다. 노르웨이의 경우 한국과 다소 차별되게 공보육시설 이용 시간에 따라 양육수당 지급액이 달라진다. 공보육시설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 월 792유로, 공보육시설 이용 시간이 주당 19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그 절반인 월 396유로가 지급되고 있다.

2. 보육·돌봄 지원 체계의 특징

덴마크와 핀란드, 노르웨이 3개국 모두 모든 아동에게 공보육시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조세를 기반으로 하여 지자체가 서비스 공급을 책임지고 수행하고 있다. 공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의 연령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덴마크가 생후 24주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핀란드와 노르웨이는 각각

생후 10개월과 만 1세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최소 연령 제한은 부모의 유급휴직 기간과 관련되는데, 대체로 자녀 출산 이후 유급휴직 기간을 사용한 이후부터 공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한국과 크게 차별되는 부분이다. 다른 차이점은 한국이 0세부터 무상보육이 가능한 반면에 북유럽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미취학 아동의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시 기본적으로 부모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가정양육수당 지급액이 사실상 시설로 지급되는 부모 보육료 지원 단가에 비해 적은 데 비해, 이들 국가는 부모의 직접 양육에 대한 보조금이 민간 보육서비스 공급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보다 훨씬 많거나 최소한 같은 수준이라는 것도 대비되는 부분이다.

〈표 2-2〉 한국과 북유럽의 아동수당 및 보육 지원 제도(2018년)

	한국*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재원/과제 여부	-조세 -비과세	-조세 -비과세	-조세 -소득과세	-조세 -비과세
자신 조사	X	X	X	X
공보육 이용 최소 연령 및 부모 비용 부담	출생 이후 무상보육/교육	-생후 24주(약 6개월) 이상 -민간 보육서비스 부모 부담 -ECEC(6개월~5세) 일부 부모 부담	-생후 10개월 이상 -민간서비스 전액 부모 부담 -ECEC(11개월~6세) 가구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0~290유로 부모 부담 (2017년 기준 ECEC 재원 중 부모 부담 14%)	-만 1세 이상 -ECEC(1~5세) 일부 부모 부담 (2017년 기준 공보육-교육비의 약 13.8%, 사보육-교육비의 약 15%) -부모 비용 부담은 유치원 이용료 월 최대 307유로이며, 부모 이용료는 가구소득의 6% 이내로 설정
수당 금액	-가정양육수당(일반) 0세: 20만 원 1세: 15만 원 2세: 10만 원 3세~85개월: 10만 원 -(농어촌 아동) 0세: 20만 원 1세: 17.7만 원 2세: 15.6만 원 3세: 12.9만 원 4세~85개월: 10만 원 -(장애 아동) 0~2세: 20만 원 3세~85개월: 10만 원	-가정양육수당(subsidies for caring for own children): 가 있는 경우 월 65,099유로 추가 자차세 보육시설 이용 아동 관련 경비의 85%를 초과할 수 없음 -사보육보조금(subsidies for private day-care scheme): 지원금은 예산액이 가장 낮은 공보육시설 순운영 원가의 최소 75%임, 그리고 부모에 의해 증빙되는 비용의 75%를 초과할 수 없음	가정양육수당(child home care allowances): * 기본수당: 아동 1인당 338,344유로 * 추가 수당: 0~2세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월 101,299유로, 3~6세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월 65,099유로 추가 자산 조사 기반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가구당 월 최대 181.07유로 추가 지급 -유연근로양육수당(flexible care allowance): 주당 근무시간이 22.5시간을 초과하지 않거나 정규직 근무시간의 60%를 초과하지 않는 부모에게 가 구당 월 241,199유로 지급, 주당 근무시간이 22.5시간을 초과하면서 정규직 근무시간의 60~80%인 경우 가구당 월 160,800유로 지급 -부분양육수당(partial child care allowance): 가구당 월 96,899유로 -사보육수당(private child care allowance): 공공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유아교육 이용 권리가 주당 20시간 이상인 아동에 대해 아동당 월 172,259유로 지급, 저소득 가구에 한하여 아동당 월 최대 144,858유로 추가 보조, 유아교육 이용 권리가 최대 20시간까지만 아동의 경우, 절반의 합인율을 적용하여 지급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NOK 7,500(792유로) 지급 주당 19시간 이하 보육시설 이용 시 NOK 3,750(396유로) 지급

주: * 한국의 경우 2018년 12월 아동수당법 개정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18.12.26) 통과 내용 반영.

자료: MISSOC. (2018). Mutual Information System for Social Protection (MISSOC) Comparative Table Database (selected update): 2018-1-1). <http://www.missoc.org/missoc-database/comparative-tables>에서 2018. 10. 3. 인출.

EC. EURYDICE(<https://eacea.ec.europa.eu/national-policies/eurydice/national-description>)에서 2019. 3. 30. 인출)

제3절 가정양육 및 보육료 지원 체계의 한계점 진단

우리나라의 가정양육수당 지원 단가는 2013년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고정되어 있다. 특히 0~2세 가정양육수당 단가는 2011년 이래 인상이 억제됨에 따라 실질적인 지원 수준의 하락 폭이 크게 나타난다. 현재 0세 20만 원, 1세 15만 원, 2세 이상 10만 원으로 주어진 가정양육수당 연령별 지원 단가는 사보육비를 제외한 필요 양육 경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파악된다.

〈표 2-3〉 아동 연령별 1인당 양육비용

(단위: 원)

구분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이상
식료품	81,714	95,827	94,916	97,170	93,913
보건	66,505	52,439	48,549	42,689	37,339
분유	26,652	16,268	2,312	214	208
이유식	2,520	2,076	926	-	-
아동용 외투	24,258	31,716	37,704	38,343	45,048
아동 내의	5,139	4,958	4,736	4,474	4,900
아동 신발	2,678	5,628	6,763	7,962	8,993
장난감	13,585	14,847	17,779	22,384	19,315
기저귀(외삽)	64,000	-	-	-	-
사보육비 ¹⁾	95,408	155,147	221,702	251,467	593,714
필수 양육비 계(a)	382,459	378,906	435,387	464,703	803,430
(보육료 제외 시, b)	(287,051)	(223,759)	(213,685)	(213,236)	(209,716)
가정양육수당 보조율(지원 단가/a) ²⁾	52.3%	39.6%	23.0%	21.5%	12.4%
(보육료 제외 시, 지원 단가/b)	(69.7%)	(67.0%)	(46.8%)	(46.9%)	(47.7%)

주: 1) 사보육비는 가정양육가구 아동 1인당 사보육비(A)임

2) 2015년 현재 연령별 부모 보육료 지원 단가/필수 양육비

자료: 고재이, 신윤정, 강신욱, 오미애, 안형석(2015, p. 184).

반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단가는 꾸준히 인상되어 가정양육수당 지원 단가와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제이, 고경표, 2017). 국회 예산정책처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영아에게 지급된 가정양육수당은 보육료보다 1인 월평균 44만 6000원 정도 적었고, 2016년에는 가정양육수당의 지원 단가가 고정된 반면, 보육료 지원 단가 인상으로 보육료보다 월 약 47만~68만 원 적게 지급되었다. 현재 시설 기반 보육 지원 단가는 가정양육 지원 단가의 4~5배까지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이채정, 2017, pp. 47-48). 한편,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의 지급 연령 기준이 각각 아동의 연령과 보육반 연령으로 차별 적용됨에 따라 영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수준의 격차는 더욱 크게 확대되고 있다. 실제 만 1세 아동의 경우 대체로 혼합반 편성에 따른 문제로 0세아 보육료가 지원되지만 가정양육의 경우에는 1세아에 대한 지원 단가가 적용되는 것이다.

이처럼 가정양육수당 지원 단가와 시설보육에 대한 지원 단가의 격차가 계속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적절한 정책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 부모들의 자녀 양육 방식 선택을 왜곡시킬 수 있는 유인 체계가 초래되며, 결국 불필요한 서비스 이용에 따른 정부 재정 낭비를 야기할 수 있다.

실제로 관련 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가정양육수당 지원 단가가 실제 양육비용이나 보육료 지원 단가보다 낮다는 점에서 불만족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고제이 외(2015)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정양육수당 수급 아동의 부모 중 71.2%는 지원 금액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고, 가장 큰 불만족의 이유는 가정양육수당이 실제 양육에 필요한 비용보다 낮다는 것이었다.

또한 엄마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가정양육수당 지원 단가가 불필요한 시설 이용을 유인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도 확인되고 있다. 본 연구의 선행연구에서 수행한 2017년 부모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보육료 지원 금액이 양육수당보다 많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아빠 외벌이’ 가구들에서 높게 나타났다(고제이, 고경표, 2017).

이와 같이 이원화된 보육 지원 체계에서 가정양육수당 지원 수준이 고정된 반면, 대체 양육 수단인 보육료 지원 단가는 지속적으로 인상되면서 양육 방식별 지원 단가의 격차 확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격차 확대가 영아의 가정양육을 제약하고 중장기적으로 확인되는 사회경제적 성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양육 방식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보육 체계에 대한 더욱 면밀한 검토와 대안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최근 도입되어 앞으로 가족정책의 핵심 급여제도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동수당제도와 연계성을 고려하여 보육 체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가정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은 현재 대상 아동의 연령이 중첩되고 급여의 형태가 현금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하지만 제도 원리에 있어서는 제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수당은 아동이 태어나면서 수급 권한을 갖는 기본소득과 같은 급여로 지급 대상이 아동 개인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가정양육수당은 제2절의 3개국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한 바와 같이 부모가 직접 자녀를 가정에서 돌보는 비용에 대한 지원으로 부모에 대한 보조금이라는 점에서 수급 주체와 지원 대상은 아동이 아닌 그 부모이다. 이처럼 아동수당의 정책 목적과 지급 대상 또는 수급 주체는 가정양육수당의 그것과 구별되지만, 현재 지급 대상 아동 연령이 자기 결정 능력이 형성되지 못한 영유아에 한정됨에 따라 부모가 아동수당의 수급권과 처분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부모의 대리권 행사가 가정양육수당과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기능적 측면에서 현재 가정양육수당이 보육서비스를 무상으로 이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부모에게 지급됨으로써 아동수당이 제공하지 못하는 보육서비스 가수요에 대한 통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수당 수급 부모들의 양육 방식 선택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가를 중심으로 아동수당제도 시행 초기의 영향을 살펴보고, 제도 간 정합성을 갖추기 위한 과제를 확인할 목적으로 영유아 부모 대상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이하에서는 조사 결과에 대한 심층 분석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겠다.

제 3 장

부모 설문조사 개요

제1절 조사의 목적과 설계

제2절 응답자 가구 특성



3

부모 설문조사 개요 <<

제1절 조사의 목적과 설계

1. 조사 목적

자녀 양육 지원 체계의 합리적 운용 방향 모색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은 동일한 연령 집단을 정책 대상으로 하는 아동수당-가정양육수당-영유아보육료 지원 제도 간 관계의 설정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이분화된 보육 체계에서는 지원 단가의 격차로 인한 영아 부모들의 불필요한 시설 이용 문제가 존재한다. 보육시설 이용 여부와 무관한 아동수당이 지급됨으로써, 부모들의 자녀 양육 행태에 변화가 생기는지의 여부와 이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제이, 고경표, 2017, pp. 107-113).

이와 관련하여 고제이, 고경표(2017)는 아동수당 지급이 부모들의 양육 방식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한 검토를 위해 2017년 아동수당제도가 도입되기에 앞서 0~2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가구 설문조사를 수행한 바 있다(고제이, 고경표, 2017, pp. 107-113).

2017년 설문조사 대상 모집단은 보육시설(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가정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만 0~2세 자녀 가구의 부모 집단이며, 모집단으로부터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515가구와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506가구를 추출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7년 5월 12일부터 2017년 5월 25일까지이며, 조사는 전화 면접을 통해 이루어졌다(고제이, 고경표, 2017, p. 108).

34 아동수당 지급에 따른 영유아 보육서비스 이용 행태 분석

〈표 3-1〉 2017년 설문조사 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어린이집에 다니거나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만 0~2세 자녀의 부모
표본 크기	어린이집 이용 515가구, 가정양육수당 수급 506가구
조사 기간 및 방법	2017년 5월 12일~2017년 5월 25일
조사 방법	전화 면접 조사

자료: 고제이, 고경표(2017, p. 108).

아동수당이 도입된다면 양육 행태를 바꿀 의사가 있는지 검토한 결과, 특히 저소득층에서 가정 양육으로 전환하거나 유지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다만 이는 실제 행태 변화와는 무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추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고제이, 고경표, 2017, p. 109).

〈표 3-2〉 2017년 조사 결과: 아동수당 도입으로 인한 양육 방식 변화 유인(소득 수준별)

소득 구간(월, 만 원)	어린이집 이용 유인 제공(%)	가정 양육 유인 제공(%)
0~199	10.45	1.49
200~299	32.84	28.36
300~399	13.43	35.82
400~499	23.88	10.45
500~799	11.94	17.91
800 이상	7.46	5.97
계	100	100

자료: 고제이, 고경표(2017, p. 109).

이어서 고제이, 고경표(2017)는 부모의 자녀 양육 행태 변화에 아동수당 도입 공약이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조사자들을 대상으로 양육 방식 전환 여부를 설문한 결과를 토대로 전환율을 계산한 바 있다(〈표 3-3〉 참조).

〈표 3-3〉 2017년 조사 결과: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양육 행태 전환 비율

연령	현 보육료-양육수당 단가 체계 유지 및 아동수당 월 10만 원 도입 시 전환율(2017 조사)	
	시설→가정	가정→시설
0세	0.0588	0.0886
1세	0.0582	0.1031
2세	0.0456	0.1067
3세 이상	-	-

자료: 고제이, 고경표(2017, p. 109).

이를 토대로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양육 행태 변화로 인한 추가 재정 소요를 추계해 본 결과, 연간 약 2000억 원의 보육료 지원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결론적으로 현재와 같은 영아 무상보육 체계가 유지된 채 아동수당제도가 도입될 경우 가정 양육이 필요한 영아 시기 불필요한 어린이집 이용이 늘어날 수 있으며 저소득층 자녀들의 시설 이용은 다소 제한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고, 재정의 효율적 배분 차원에서 보육 체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한 바 있다(고제이, 고경표, 2017, p.113).

이러한 우려와 함께 정책적 기대 속에서 2018년 9월 전국 2인 이상 가구소득 하위 90% 이하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첫 번째 아동수당 지급이 이루어졌다. 제도 시행 전의 조사에서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모의 양육 방식 선택에 대한 왜곡이 실제 아동수당 지급 결과로도 확인될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아동수당제도의 시행 초기 자녀 양육 행태 등에 관한 영향을 점검하고 타 제도와의 관계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조기에 검토하여 합리적 가족정책의 발전과 성숙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2017년 조사된 바 있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를 계획하였다. 본 연구의 전체 수행 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까지로 제한된 상황에서, 아동수당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짐을 예상하

여 11월 중에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예상보다 아동수당 선별 지급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크게 작용하여 10월까지도 상당수 아동수당 신청자에 대한 소득 판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조사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늦춘 12월 초로 조정하여 실시하였다. 한편, 선별 지급을 위한 소득·자산 조사와 관련하여 부모들의 불편이 가중되었고 아동수당 선별 지급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가열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맞물리면서 높은 조사 응답 거부율로 나타났다. 이에 조사 대상을 아동수당 지급 대상인 만 0~5세 자녀 양육 부모로 확대하였고, 신규 조사 가구를 추가하여 가구 특성, 아동 특성, 양육수당 수급 및 어린이집 이용 현황, 아동수당제도에 관한 전반적 사항들에 관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2017년 7월 조사에서는 아동수당 도입 전 자녀 양육 정책에 대한 인식, 아동수당제도의 기능과 필요성 및 가정양육·보육 행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2018년 조사에서는 아동수당 신청과 수급 여부를 고려하여 제도 도입 전후 양육 행태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하고 2017년의 표본 가구들을 추적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2. 조사 설계

조사 모집단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인 만 0~5세 자녀 양육 가구이다. 모집단과 관련된 리스트 조사를 바탕으로 표집하여 총 600가구의 부 또는 모를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총 600가구 중 335가구는 2017년에 조사된 어린이집 이용 및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이며, 265가구는 2018년 조사에 신규 참여한 가구이다.⁴⁾ 조사 방법으로 구조화된 설문지

4) 2017년에 조사된 1021가구 전수를 추적 조사하였으나, 아동수당 선별 지급에 따른 수급

를 활용한 전화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기간은 2018년 12월 6일부터 2018년 12월 21일까지이다.

〈표 3-4〉 조사 설계

구분	내용
모집단	· 0~5세 자녀 양육 가구
표집 방법	· 리스트 전수 조사
표본 크기	· 600가구(2017년 조사 참여 가구: 335가구, 2018년 신규 가구: 265가구)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전화 조사
조사 일시	· 2018년 12월 6일(목)~12월 21일(금)
조사 기관	· ㈜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제2절 응답자 가구 특성

1. 일반적 특성

2018년 설문조사에 응답한 600가구의 55.8%인 335가구는 2017년 조사에도 참여한 바 있으며, 나머지 265가구(44.2%)는 2018년에 신규 조사된 가구이다.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경기권에 거주하는 가구가 전체의 32.8%인 197가구로 가장 비율이 높다. 다음으로 서울이 169가구(28.2%)로 그 뒤를 이었다. 비율이 가장 낮은 거주 지역은 세종시로 전체의 0.7%를 차지하였다.

여부 결정 지연과 불편, 사립유치원·어린이집 비리 의혹 등으로 응답 거부율이 이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신규로 265가구를 추가로 조사하여 총 600가구에 대한 설문조사를 완료하였다.

38 아동수당 지급에 따른 영유아 보육서비스 이용 행태 분석

〈표 3-5〉 거주 지역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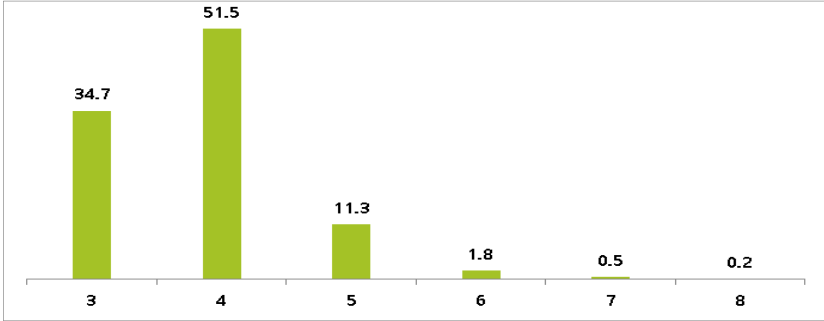
(단위: 가구, %)

구분		사례 수	비율
전체		(600)	100.0
2017년 조사 여부	2017년 조사 참여	(335)	55.8
	2017년 조사 미참여	(265)	44.2
지역	서울	(169)	28.2
	부산	(27)	4.5
	대구	(23)	3.8
	인천	(34)	5.7
	광주	(8)	1.3
	대전	(20)	3.3
	울산	(13)	2.2
	경기	(197)	32.8
	강원	(10)	1.7
	충북	(8)	1.3
	충남	(16)	2.7
	전북	(7)	1.2
	전남	(13)	2.2
	경북	(16)	2.7
	경남	(26)	4.3
제주	(9)	1.5	
세종	(4)	0.7	

가구원 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가구원이 4명인 가구 비율이 51.5%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였고 가구원 수가 3명인 가구의 비율이 34.7%로 나타났다. 즉, 전체 응답 가구의 86.2%가 3~4인의 비교적 소규모 가구이다.

[그림 3-1] 가구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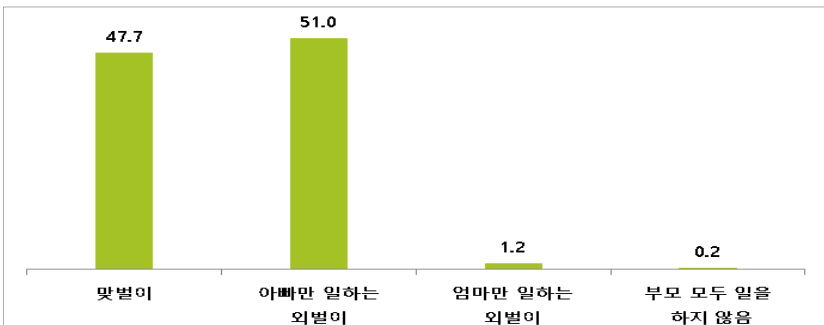
(단위: %, Base: 600)



가구소득 유형은 맞벌이, 외벌이 여부로 파악하였다. 맞벌이 비율은 47.7%로 전체 가구 수의 절반에 가까웠다. 외벌이 가구는 52.2%이며, 아빠만 일하는 외벌이가 전체 외벌이 가구의 약 97.7%를 차지하였다. 부모 모두 일하지 않는 가구는 0.2%에 불과하였다.

[그림 3-2] 가구소득 유형(맞벌이 여부)

(단위: %, Base: 600)



40 아동수당 지급에 따른 영유아 보육서비스 이용 행태 분석

지역별 맞벌이 가구의 비율은 전북이 85.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제주(66.7%), 충북(62.5%), 대구(60.9%) 순이었다. 외벌이 가구의 비율은 충남에서 68.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높은 곳은 부산(63.0%)이었다.

〈표 3-6〉 가구소득 유형(맞벌이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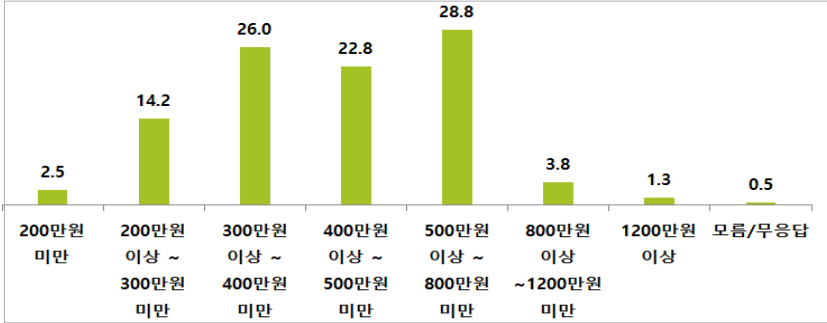
(단위: 가구, %)

구분	사례 수	맞벌이	외벌이 (아빠)	외벌이 (아빠)	둘 다 일하지 않음	계	
전체	(600)	47.7	51.0	1.2	0.2	100.0	
지역	서울	(169)	50.3	48.5	1.2	0.0	100.0
	부산	(27)	29.6	63.0	3.7	3.7	100.0
	대구	(23)	60.9	39.1	0.0	0.0	100.0
	인천	(34)	47.1	50.0	2.9	0.0	100.0
	광주	(8)	37.5	62.5	0.0	0.0	100.0
	대전	(20)	45.0	50.0	5.0	0.0	100.0
	울산	(13)	38.5	61.5	0.0	0.0	100.0
	경기	(197)	47.7	52.3	0.0	0.0	100.0
	강원	(10)	40.0	60.0	0.0	0.0	100.0
	충북	(8)	62.5	37.5	0.0	0.0	100.0
	충남	(16)	25.0	68.8	6.3	0.0	100.0
	전북	(7)	85.7	14.3	0.0	0.0	100.0
	전남	(13)	30.8	61.5	7.7	0.0	100.0
	경북	(16)	56.3	43.8	0.0	0.0	100.0
	경남	(26)	46.2	53.8	0.0	0.0	100.0
	제주	(9)	66.7	33.3	0.0	0.0	100.0
	세종	(4)	50.0	50.0	0.0	0.0	100.0

월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500만 원 이상~800만 원 미만인 가구 비율이 28.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인 가구 비율이 26.0%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가구(약 77.6%)의 소득이 300만 원 이상 800만 원 미만대에 속했다.

[그림 3-3] 월평균 가구소득

(단위: %, Base: 600)



지역별로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가구의 비율은 전남에서 15.4%로 가장 높았다. 충남(12.5%), 부산(11.1%)도 상대적으로 저소득 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이 500만 원 이상 800만 원 미만인 가구의 비율은 광주에서 37.5%로 가장 높았고, 부산이 7.4%로 가장 낮았다. 1200만 원 이상 고소득 가구는 경상권(경북 6.3%, 경남 7.7%)에 많이 쏠려 있었다.

42 아동수당 지급에 따른 영유아 보육서비스 이용 행태 분석

〈표 3-7〉 월평균 가구소득

(단위: 가구, %)

구분	사례 수	200만 원 미만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	4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	500만 원 이상-800만 원 미만	800만 원 이상-1200만 원 미만	1200만 원 이상	모름/무응답	계
전체	(600)	2.5	14.2	26.0	22.8	28.8	3.8	1.3	0.5	100.0
	서울	1.8	13.0	21.9	18.9	34.9	7.7	1.2	0.6	100.0
	부산	11.1	25.9	25.9	25.9	7.4	0.0	3.7	0.0	100.0
	대구	4.3	17.4	13.0	26.1	30.4	8.7	0.0	0.0	100.0
	인천	0.0	5.9	35.3	29.4	26.5	2.9	0.0	0.0	100.0
	광주	0.0	25.0	0.0	25.0	37.5	0.0	0.0	12.5	100.0
	대전	0.0	10.0	55.0	15.0	20.0	0.0	0.0	0.0	100.0
	울산	0.0	7.7	30.8	30.8	30.8	0.0	0.0	0.0	100.0
	경기	2.0	8.6	27.9	26.4	30.5	3.0	1.0	0.5	100.0
	강원	0.0	20.0	30.0	40.0	10.0	0.0	0.0	0.0	100.0
	충북	0.0	25.0	25.0	25.0	25.0	0.0	0.0	0.0	100.0
	충남	12.5	31.3	18.8	18.8	12.5	6.3	0.0	0.0	100.0
	전북	0.0	28.6	28.6	14.3	28.6	0.0	0.0	0.0	100.0
전남	15.4	15.4	30.8	23.1	15.4	0.0	0.0	0.0	100.0	
경북	0.0	31.3	18.8	12.5	31.3	0.0	6.3	0.0	100.0	
경남	26.0	30.8	26.9	3.8	30.8	0.0	7.7	0.0	100.0	
제주	(9)	0.0	11.1	22.2	44.4	22.2	0.0	0.0	0.0	100.0
세종	(4)	0.0	25.0	25.0	25.0	25.0	0.0	0.0	0.0	100.0
0세	(64)	3.1	20.3	21.9	23.4	21.9	6.3	3.1	0.0	100.0
1세	(118)	3.4	11.0	31.4	22.0	30.5	0.8	0.0	0.8	100.0
2세	(127)	2.4	18.1	29.9	20.5	23.6	3.9	1.6	0.0	100.0
3세	(105)	4.8	18.1	22.9	18.1	26.7	6.7	2.9	0.0	100.0
4세	(98)	1.0	13.3	21.4	27.6	29.6	5.1	0.0	2.0	100.0
5세	(88)	0.0	4.5	25.0	27.3	40.9	1.1	1.1	0.0	100.0
지역	서울	1.8	13.0	21.9	18.9	34.9	7.7	1.2	0.6	100.0
	부산	11.1	25.9	25.9	25.9	7.4	0.0	3.7	0.0	100.0
	대구	4.3	17.4	13.0	26.1	30.4	8.7	0.0	0.0	100.0
	인천	0.0	5.9	35.3	29.4	26.5	2.9	0.0	0.0	100.0
	광주	0.0	25.0	0.0	25.0	37.5	0.0	0.0	12.5	100.0

2. 자녀 구성과 양육 행태

응답 가구들의 자녀 구성을 보면, 최대 자녀 수는 4명이다. 자녀 수가 2명인 가구 비율이 51.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명인 가구(37.5%), 3명인 가구(10.8%), 4명인 가구(0.3%) 순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거주 가구들의 경우 자녀 수 1~2명인 가구가 91.7%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부산 거주 가구들의 경우 2자녀 가구 비율이 59.3%로 가장 높고 1자녀 가구는 29.6%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3자녀 가구의 경우 충남에서 37.5%로 가장 높고 전남(23.1%)과 세종(25.0%)도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표 3-8〉 자녀 수

(단위: 가구, %)

구분	사례 수	1	2	3	4	계	
전체	(600)	37.5	51.3	10.8	0.3	100.0	
지역	서울	(169)	46.7	45.0	8.3	0.0	100.0
	부산	(27)	29.6	59.3	11.1	0.0	100.0
	대구	(23)	21.7	65.2	13.0	0.0	100.0
	인천	(34)	41.2	44.1	14.7	0.0	100.0
	광주	(8)	50.0	37.5	12.5	0.0	100.0
	대전	(20)	20.0	70.0	10.0	0.0	100.0
	울산	(13)	30.8	69.2	0.0	0.0	100.0
	경기	(197)	37.6	51.8	9.6	1.0	100.0
	강원	(10)	50.0	30.0	20.0	0.0	100.0
	충북	(8)	12.5	62.5	25.0	0.0	100.0
	충남	(16)	18.8	43.8	37.5	0.0	100.0
	전북	(7)	42.9	57.1	0.0	0.0	100.0
	전남	(13)	15.4	61.5	23.1	0.0	100.0
	경북	(16)	31.3	56.3	12.5	0.0	100.0
	경남	(26)	38.5	57.7	3.8	0.0	100.0
	제주	(9)	33.3	55.6	11.1	0.0	100.0
세종	(4)	25.0	50.0	25.0	0.0	100.0	

44 아동수당 지급에 따른 영유아 보육서비스 이용 행태 분석

가구 내 최연소 자녀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만 2세 아동 가구 비율이 21.2%로 가장 높고, 만 0세 아동 가구가 10.7%로 가장 낮다. 지역별로 보면 만 2세 아동 가구 비율은 세종에서 50.0%로 가장 높다. 만 0세 아동 가구 비율은 전남에서 23.1%로 가장 높으며, 만 1세 아동 가구 비율은 부산에서 37.0%로 가장 높다. 만 5세 아동 가구 비율은 전국으로 보면 14.7%이나 전북 기준으로만 보면 그 비율이 42.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표 3-9〉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

(단위: 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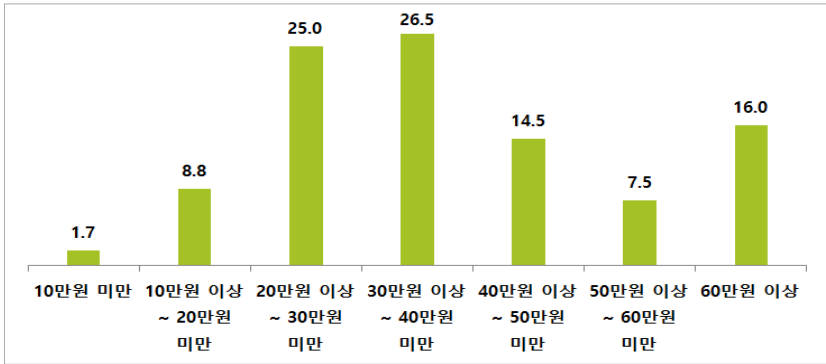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계	
전체	(600)	10.7	19.7	21.2	17.5	16.3	14.7	100.0	
지역	서울	(169)	10.1	20.1	23.7	13.6	17.8	14.8	100.0
	부산	(27)	18.5	37.0	18.5	11.1	3.7	11.1	100.0
	대구	(23)	17.4	13.0	21.7	21.7	13.0	13.0	100.0
	인천	(34)	20.6	17.6	26.5	2.9	20.6	11.8	100.0
	광주	(8)	0.0	25.0	12.5	12.5	50.0	0.0	100.0
	대전	(20)	10.0	25.0	10.0	25.0	20.0	10.0	100.0
	울산	(13)	15.4	15.4	15.4	38.5	0.0	15.4	100.0
	경기	(197)	6.6	21.3	20.8	17.3	17.3	16.8	100.0
	강원	(10)	10.0	20.0	10.0	50.0	10.0	0.0	100.0
	충북	(8)	12.5	12.5	12.5	25.0	25.0	12.5	100.0
	충남	(16)	12.5	25.0	18.8	25.0	6.3	12.5	100.0
	전북	(7)	0.0	14.3	14.3	0.0	28.6	42.9	100.0
	전남	(13)	23.1	0.0	15.4	15.4	23.1	23.1	100.0
	경북	(16)	12.5	25.0	12.5	31.3	0.0	18.8	100.0
	경남	(26)	11.5	7.7	30.8	23.1	19.2	7.7	100.0
	제주	(9)	22.2	0.0	22.2	22.2	11.1	22.2	100.0
세종	(4)	0.0	0.0	50.0	50.0	0.0	0.0	100.0	

월평균 자녀 양육비(최연소 자녀 1명 기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약 66%)의 가구가 자녀 양육비로 월평균 2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만 원 이상 40만 원 미만을 지출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의 26.5%로 가장 높았고, 20만 원 이상 30만 원 미만을 지출하

는 가구는 전체의 25.0%였다. 반면 전체 응답 가구의 약 16%가 월평균 60만 원 이상을 자녀 양육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 월평균 자녀 양육비(최연소 자녀 1명 기준)

(단위: %, Base: 600)



조사 대상 가구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 중이거나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만 0~5세 아동의 수를 조사한 결과, 1명인 가구가 전체의 65.7%인 것으로 나타났다. 2명의 자녀가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비율은 31.2%로 두 번째로 높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어린이집을 이용 중이거나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만 0~5세 아동의 수가 1명인 가구 비율이 높은 곳에 속하는 지역은 세종(100.0%), 광주(87.5%), 전남(84.6%), 강원(80.0%) 등으로 나타났고, 제주(55.6%), 경북(50.0%), 충남(50.0%), 울산(46.2%) 등은 그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46 아동수당 지급에 따른 영유아 보육서비스 이용 행태 분석

〈표 3-10〉 어린이집을 이용 중이거나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만 0~5세 아동의 수

(단위: 가구, %)

구분		사례 수	1	2	3	4	계
전체		(600)	65.7	31.2	2.7	0.3	100.0
지역	서울	(169)	68.6	29.6	1.8	0.0	100.0
	부산	(27)	48.1	51.9	0.0	0.0	100.0
	대구	(23)	65.2	34.8	0.0	0.0	100.0
	인천	(34)	70.6	26.5	2.9	0.0	100.0
	광주	(8)	87.5	12.5	0.0	0.0	100.0
	대전	(20)	60.0	40.0	0.0	0.0	100.0
	울산	(13)	46.2	53.8	0.0	0.0	100.0
	경기	(197)	65.0	31.0	2.5	1.0	100.0
	강원	(10)	80.0	20.0	0.0	0.0	100.0
	충북	(8)	75.0	25.0	0.0	0.0	100.0
	충남	(16)	50.0	25.0	25.0	0.0	100.0
	전북	(7)	57.1	42.9	0.0	0.0	100.0
	전남	(13)	84.6	7.7	7.7	0.0	100.0
	경북	(16)	50.0	43.8	6.3	0.0	100.0
	경남	(26)	73.1	23.1	3.8	0.0	100.0
제주	(9)	55.6	44.4	0.0	0.0	100.0	
세종	(4)	100.0	0.0	0.0	0.0	100.0	
자녀 나이	0세	(64)	25.0	60.9	10.9	3.1	100.0
	1세	(118)	44.1	52.5	3.4	0.0	100.0
	2세	(127)	67.7	30.7	1.6	0.0	100.0
	3세	(105)	69.5	27.6	2.9	0.0	100.0
	4세	(98)	83.7	15.3	0.0	0.0	100.0
	5세	(88)	96.6	3.4	0.0	0.0	100.0

제 4 장

아동수당 도입과 양육 행태에 관한 분석

제1절 아동수당 이용 행태

제2절 아동수당 수급이 자녀 양육 행태에 미친 영향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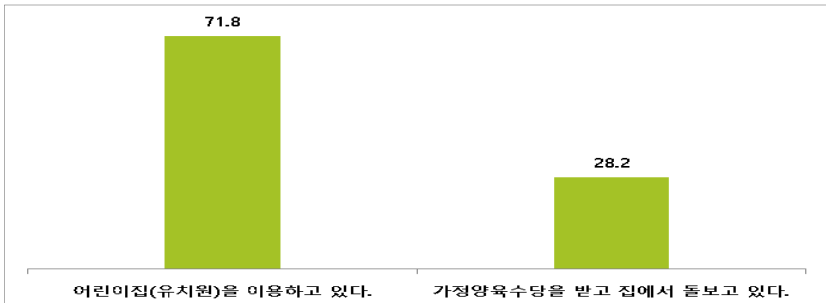
아동수당 도입과 양육 행태에 << 관한 분석

제1절 아동수당 이용 행태

이하에서는 아동수당제도 도입에 따른 자녀 양육 행태의 변화에 관한 조사 결과를 정리해 본다. 우선 각 조사 가구들을 대상으로 최연소 자녀의 양육 방식을 질문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다는 가구의 수는 전체 600가구 중 431가구(71.8%)로, 보육시설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림 4-1] 자녀 양육 방식(최연소 자녀 기준)

(단위: %, Base: 600)



가구소득 수준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고소득층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저소득층은 가정양육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값: 0.082).

구체적으로 가구소득이 500만~799만 원에 해당하는 가구들의 경우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이 77.5%(134가구), 가정양육 비율이 22.5%

50 아동수당 지급에 따른 영유아 보육서비스 이용 형태 분석

(39가구)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이 8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가구들도 이와 유사한 수치를 보였다. 반면 가구소득이 199만 원 이하인 가구들의 경우,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은 60.0%인 데 반해 가정양육 비율은 40.0%인 것으로 나타나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정양육 비율이 높았다. 가구소득이 200만~299만 원인 가구들의 경우에도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은 67.1%이고, 가정양육 비율은 32.9%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최연소 자녀의 양육 방식(가구소득 수준별)

(단위: 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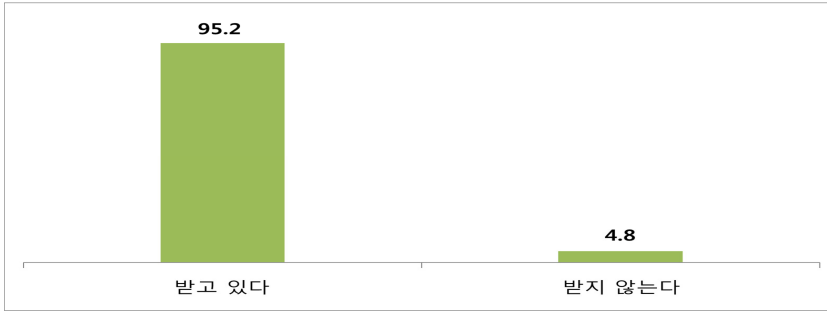
구분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다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집에서 돌보고 있다	계
199만 원 이하	빈도	9	6	15
	비율	60.0	40.0	100.0
200만~299만 원	빈도	57	28	85
	비율	67.1	32.9	100.0
300만~399만 원	빈도	101	55	156
	비율	64.7	35.3	100.0
400만~499만 원	빈도	103	34	137
	비율	75.2	24.8	100.0
500만~799만 원	빈도	134	39	173
	비율	77.5	22.5	100.0
800만 원 이상	빈도	24	7	31
	비율	77.4	22.6	100.0
계	빈도	428	169	597
	비율	71.7	28.3	100.0

주: $\chi^2=9.7769$, $p\text{-value}=0.082$, 가구소득 무응답 가구 제외.

조사 가구들을 대상으로 2018년 9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 월 10만 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았을 때, ‘받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이 95.2%로 나왔고, ‘받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4.8%인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600가구 기준).

[그림 4-2] 아동수당(월 10만 원) 수급 여부

(단위: %, Base: 600)



조사 대상 가구의 아동수당 수급 여부 분포는 선별 지급에 따른 예상과 같이 소득 수준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수당 수급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p 값: 0.000). 구체적으로 가구소득이 199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들의 아동수당 수급률은 100%였으며, 200만~299만 원에 해당하는 가구들의 수급률도 98.8%로 매우 높은 편에 속했다. 반면 가구소득이 800만 원 이상인 고소득층의 경우 수급률이 64.5%로 낮은 편이었다.

2018년 12월 26일 아동수당의 보편적 지급을 내용으로 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였으나, 2018년 설문조사 기간이 12월 초부터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소득 수준별 수급 여부 차이는 선별 지급에 따른 차이에 기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일부 저소득 및 중간 소득층 가구들 중 아동수당을 수급 받지 않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후술한다.

52 아동수당 지급에 따른 영유아 보육서비스 이용 행태 분석

〈표 4-2〉 아동수당(월 10만 원) 수급 여부(가구소득 수준별)

(단위: 가구, %)

구분		받고 있다	받지 않는다	계
199만 원 이하	빈도	15	0	15
	비율	100.0	0.0	100.0
200만~299만 원	빈도	84	1	85
	비율	98.8	1.2	100.0
300만~399만 원	빈도	150	6	156
	비율	96.2	3.9	100.0
400만~499만 원	빈도	135	2	137
	비율	98.5	1.5	100.0
500만~799만 원	빈도	164	9	173
	비율	94.8	5.2	100.0
800만 원 이상	빈도	20	11	31
	비율	64.5	35.5	100.0
계	빈도	568	29	597
	비율	95.1	4.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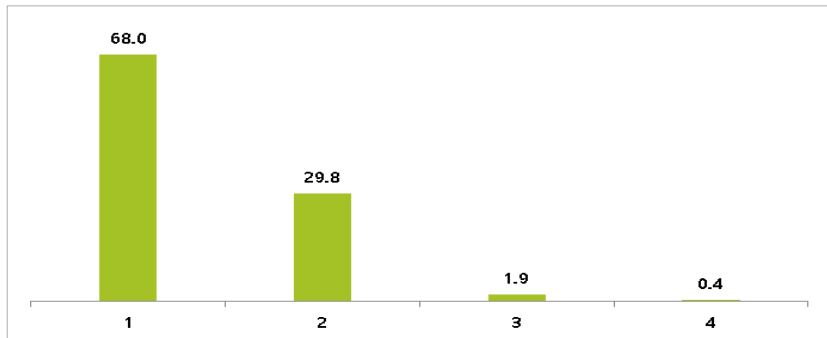
주: 1) $\chi^2=69.9847$, $p\text{-value}=0.000$, 가구소득 무응답 3가구 제외.

2) 소득 무응답 3가구로 인해 본문의 전체 600가구 기준 응답률과 소폭의 차이가 있음.

다음으로 각 조사 가구별 아동수당 수급자 수를 확인해 본 결과, 1명이라고 응답한 가구 비율이 68.0%로 가장 높았고, 2명이라고 응답한 가구 비율이 29.8%로 두 번째로 높았다.

〔그림 4-3〕 아동수당(월 10만 원) 수급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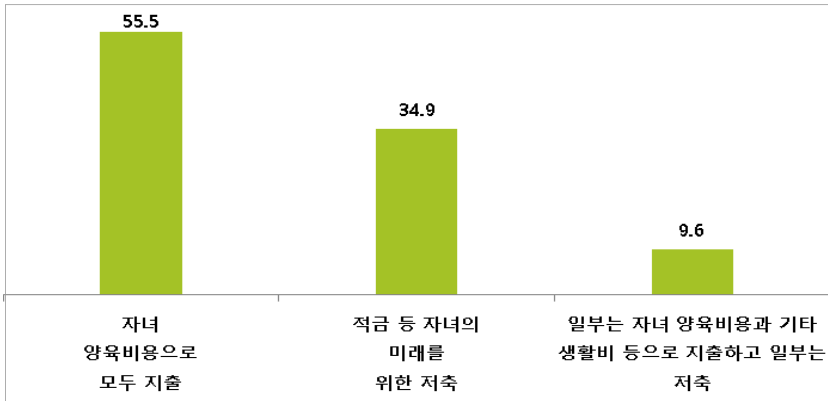
(단위: %, Base: 571)



아동수당 수급 가구들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전체 응답 가구(571가구)의 55.5%는 아동수당 전액을 자녀 양육비로 지출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34.9%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 저축한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9.6%는 자녀 양육비, 생활비, 저축에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4] 아동수당(월 10만 원)의 활용

(단위: %, Base: 571)



소득 수준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층 가구들은 양육, 생활비, 저축 모두 활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산층 가구들은 전액 양육비로 활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리고 고소득 가구들은 아동수당 전액을 저축으로 활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p 값: 0.002).

54 아동수당 지급에 따른 영유아 보육서비스 이용 형태 분석

〈표 4-3〉 아동수당의 활용(가구소득 수준별)

(단위: 가구, %)

구분		전액 양육비	저축	양육, 생활비, 저축	계
199만 원 이하	빈도	8	2	5	15
	비율	53.3	13.3	33.3	100.0
200만~299만 원	빈도	61	17	6	84
	비율	72.6	20.2	7.1	100.0
300만~399만 원	빈도	80	52	18	150
	비율	53.3	34.7	12.0	100.0
400만~499만 원	빈도	73	49	13	135
	비율	54.1	36.3	9.6	100.0
500만~799만 원	빈도	83	68	13	164
	비율	50.6	41.5	7.9	100.0
800만 원 이상	빈도	11	9	0	20
	비율	55.0	45.0	0.0	100.0
계	빈도	316	197	55	568
	비율	55.6	34.7	9.7	100.0

주: 1) $\chi^2=27.7466$, $p\text{-value}=0.002$, 아동수당 활용 및 가구소득 무응답 가구 제외.

2) 소득 무응답 3가구로 인해 본문의 571가구 기준 응답률과 소폭의 차이가 있음.

구체적으로 가구소득이 199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들은 전액 양육비로 활용하는 비율이 53.3%로 나타났지만, 아동수당을 쪼개어 양육, 생활비, 저축에 모두 활용하는 가구의 비율도 약 33.3%로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구소득이 200만~299만 원, 300만~399만 원, 400만~499만 원에 해당하는 가구들의 경우 아동수당 전액을 자녀 양육비로 활용하는 비율이 각각 72.6%, 53.3%, 54.1%로 다른 소득계층 가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500만~799만 원 및 800만 원 이상의 고소득 가구들은 전액 양육비로 사용한다는 비율이 각각 50.6%와 55%였다.

추가적으로 아동수당 활용에 관한 성남시 응답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남시는 아동수당 지급이 시작된 2018년 9월 이래로 시민들에게 다른 지역보다 수당이 1만 원 더 많은 11만 원 가치의 바우처(체크카드형)를 지급해 오고 있다. 이 바우처의 사용처는 지역 내 가맹점으로 제한

된다는 점에서 성남시의 가구와 타 지역 가구 간에 인식 및 행태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아동수당의 활용과 성남시 거주 여부 간에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성남시의 응답 가구들은 타 지역에 비해 아동수당 전액을 양육비로 활용하는 비율이 92.3%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성남시 응답자의 경우 바우처 사용처에 제한이 존재하는 만큼 별다른 대안이 없을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과이며, 저축을 한다고 응답한 1가구가 오히려 이상치라 할 수 있다.

특히 결과 해석에 반드시 주의해야 될 점은 성남시 응답자수가 13명에 불과하여 2018년 설문조사 전체 응답자 수의 약 2%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즉, 소수의 표본이 성남시를 대표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결과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이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표 4-4〉 아동수당의 활용(성남시 거주 여부별)

(단위: 가구, %)

구분		전액 양육비	저축	양육, 생활비, 저축	계
타 지역	빈도	305	198	55	558
	비율	54.7	35.5	9.9	100.0
성남시	빈도	12	1	0	13
	비율	92.3	7.7	0.0	100.0
계	빈도	317	199	55	571
	비율	55.5	34.9	9.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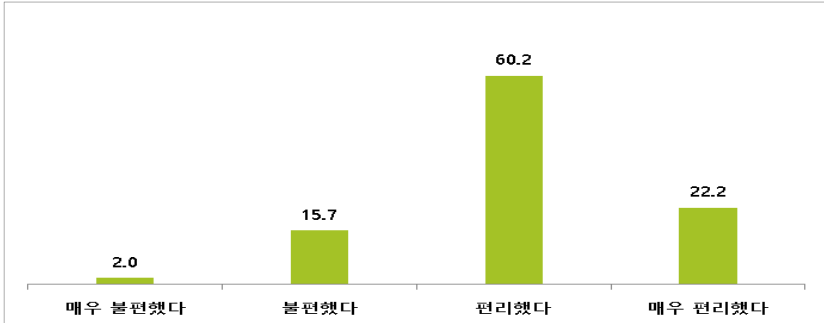
주: $\chi^2=7.3403$, $p\text{-value}=0.025$, 아동수당 활용 무응답 가구 제외.

다음으로 아동수당 신청·지급과 관련하여 신청 과정의 불편 여부를 설문한 결과 매우 편리 또는 편리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82.4%로 상당수가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머지 17.7%는 불편을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56 아동수당 지급에 따른 영유아 보육서비스 이용 행태 분석

[그림 4-5] 아동수당 신청 과정의 편리함

(단위: %, Base: 600)



앞서 살펴본 대로 조사 가구들의 아동수당 수급률은 약 95.2%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했는데, 이들 대부분은 가구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아동수당 신청 과정이 상대적으로 편리했다고 느끼고 있었다(p값: 0.471).

<표 4-5> 아동수당 신청 과정의 편리함(가구소득 수준별)

(단위: 가구, %)

구분		매우 불편	불편	편리	매우 편리	계
199만 원 이하	빈도	0	1	12	2	15
	비율	0.0	6.7	80.0	13.3	100.0
200만~299만 원	빈도	1	14	55	15	85
	비율	1.2	16.5	64.7	17.7	100.0
300만~399만 원	빈도	3	26	103	24	156
	비율	1.9	16.7	66.0	15.4	100.0
400만~499만 원	빈도	3	18	78	38	137
	비율	2.2	13.1	56.9	27.7	100.0
500만~799만 원	빈도	4	32	95	42	173
	비율	2.3	18.5	54.9	24.3	100.0
800만 원 이상	빈도	1	3	18	9	31
	비율	3.2	9.7	58.1	29.0	100.0
계	빈도	12	94	361	130	597
	비율	2.0	15.8	60.5	21.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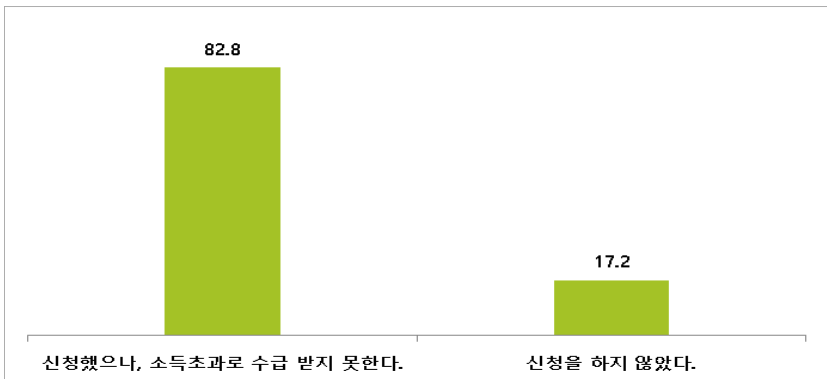
주: 1) $\chi^2=14.7318$, $p\text{-value}=0.471$, 가구소득 무응답 가구 제외.

2) 소득 무응답 3가구로 인해 본문의 600가구 기준 응답률과 소폭의 차이가 있음.

한편, 조사 가구의 약 4.8%에 해당하는 29가구가 아동수당을 수급 받지 않고 있었음을 앞서 살펴본 바 있다. 그 이유를 살펴본 결과, 조사 시점 당시의 선별 지급 기준이 충족되지 못하여 수급 받지 못한 가구의 비율이 약 82.8%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7.2%는 아예 신청을 하지 않은 가구에 해당하였다. 소득 기준 초과로 수급 받지 못한 가구의 30%가 신청 과정에서 불편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수급 여부가 신청 절차에 대한 만족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6] 아동수당을 수급받지 않는 이유

(단위: %, Base: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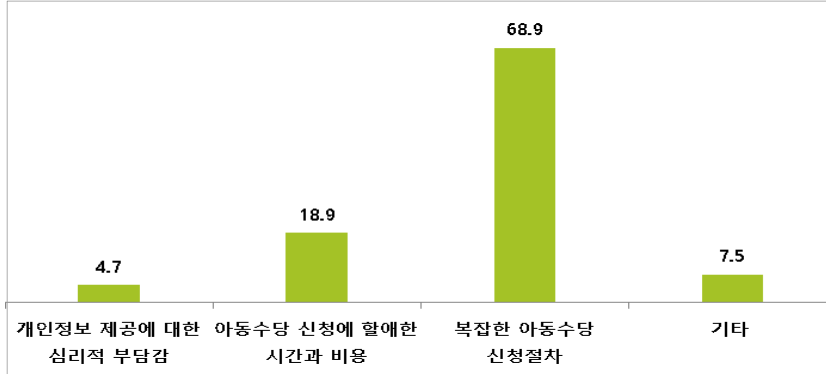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체 조사 가구의 약 17.7%에 해당하는 106가구는 아동수당의 신청 절차가 불편했다고 여기고 있는데,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를 보도록 하자. 신청 불편을 경험한 106가구 중 68.9%는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고 보았다. 다음 18.9%는 신청에 할애하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4.7%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불편 이유로 꼽고 있었다.

58 아동수당 지급에 따른 영유아 보육서비스 이용 행태 분석

[그림 4-7] 아동수당 신청이 불편한 이유

(단위: %, Base: 106)



이에 아동수당 신청 과정에 드는 경제적·정신적 부담 비용을 측정해 보기 위해 전체 조사 가구들을 대상으로 그 비용 크기를 물어보았다. 그러나 전체 조사 가구 중 44%만이 응답하였고 절반 이상이 응답을 거절하였는데, 그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화 면접 조사의 한계로 확인이 어려웠다. 무응답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264가구 중 아동수당 신청에 소모되는 비용이 10만 원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이 87.9%로 가장 높았고 10만 원 초과라고 응답한 비율은 12.1%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이나 수급 여부에 따른 응답 금액의 통계적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중위 금액은 1만 5,000원, 평균 금액은 7만 8,898원으로 나타났다.

〈표 4-6〉 아동수당 신청의 경제적·정신적 부담 비용(가구소득 수준별)

(단위: 가구, %)

구분		0~5만 원	~10만 원	~50만 원	50만 원 초과	계
199만 원 이하	빈도	2	0	1	0	3
	비율	66.7	0.0	33.3	0.0	100.0
200만~299 만 원	빈도	25	8	5	2	40
	비율	62.5	20.0	12.5	5.0	100.0
300만~399 만 원	빈도	54	7	7	3	71
	비율	76.1	9.9	9.9	4.2	100.0
400만~499 만 원	빈도	42	4	6	1	53
	비율	79.3	7.6	11.3	1.9	100.0
500만~799 만 원	빈도	67	9	6	0	82
	비율	81.7	11.0	7.3	0.0	100.0
800만 원 이상	빈도	13	1	0	1	15
	비율	86.7	6.7	0.0	6.7	100.0
계	빈도	203	29	25	7	264
	비율	76.9	11.0	9.5	2.6	100.0

주: $\chi^2=14.7871$, $p\text{-value}=0.467$, 아동수당 신청의 경제적/정신적 부담 비용 무응답 가구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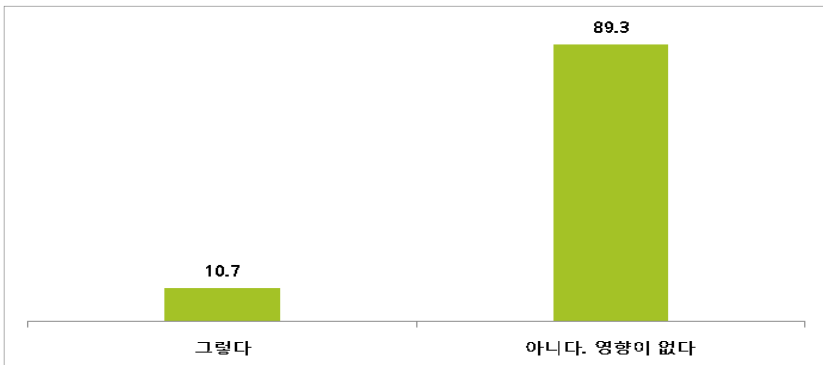
제2절 아동수당 수급이 자녀 양육 행태에 미친 영향

2017년 설문조사 때와 유사하게, 2018년 설문조사에서도 아동수당 도입이 자녀를 돌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사해 보았다. 2017년 당시에는 아동수당 도입 이전에 이루어진 질문이었기 때문에, 실제 영향을 미쳤는지까지는 파악할 수 없었다. 자녀 양육 방식과 관련하여 정책 충격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전체 600가구를 대상으로 아동수당 도입이 자녀를 돌보는 방식에 영향을 주었는지의 여부를 물어본 결과, 89.3%가 영향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10.7%인 64가구는 영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4-8] 아동수당이 자녀 양육 방식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단위: %, Base: 600)



소득 수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199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들의 경우 26.7%가 영향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73.3%는 영향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영향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가구소득 수준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 예로 가구소득이 500만~799만 원에

해당하는 고소득 가구의 경우, 영향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91.9%에 달했다. 즉, 가구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영향이 없다고 인식하였다(단, p 값은 0.12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 4-7〉 아동수당이 자녀 양육 방식에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가구소득 수준별)

(단위: 가구, %)

구분		그렇다	아니다	계
199만 원 이하	빈도	4	11	15
	비율	26.7	73.3	100.0
200만~299만 원	빈도	13	72	85
	비율	15.3	84.7	100.0
300만~399만 원	빈도	16	140	156
	비율	10.3	89.7	100.0
400만~499만 원	빈도	12	125	137
	비율	8.8	91.2	100.0
500만~799만 원	빈도	14	159	173
	비율	8.1	91.9	100.0
800만 원 이상	빈도	5	26	31
	비율	16.1	83.9	100.0
계	빈도	64	533	597
	비율	10.7	89.3	100.0

주: $\chi^2=8.6245$, p -value=0.125, 가구소득 무응답 가구 제외.

이어서 성남시 사례를 살펴보자. 먼저 아동수당제도가 자녀 양육 방식에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가 성남시 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지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성남시 가구의 경우 타 지역 가구에 비해 영향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물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으며, 성남시 가구의 표본 크기가 작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62 아동수당 지급에 따른 영유아 보육서비스 이용 행태 분석

〈표 4-8〉 아동수당이 자녀 양육 방식에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성남시 거주 여부별)

(단위: 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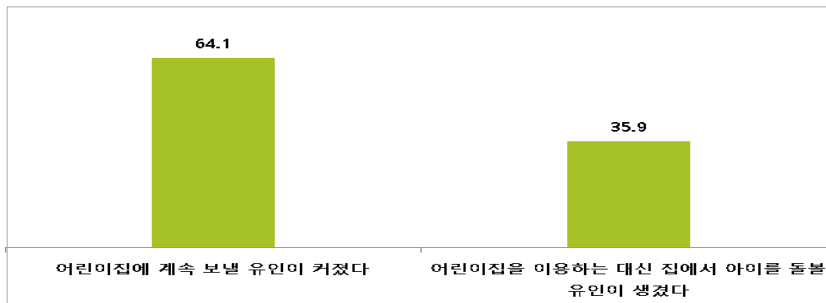
구분		영향 없음	영향 있음	계
그 외	빈도	523	64	587
	비율	89.1	10.9	100.0
성남시	빈도	13	0	13
	비율	100.0	0.0	100.0
계	빈도	536	64	600
	비율	89.3	10.7	100.0

주: $\chi^2=1.5866$, $p\text{-value}=0.208$

한편, 앞서의 64가구는 아동수당 도입이 자녀 양육 방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이들을 대상으로 실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세부적으로 질문해 보았다. 그 결과 64가구의 약 64.1%는 어린이집에 계속 보낼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어린이집 대신 집에서 자녀를 돌볼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5.9%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9] 아동수당 도입이 자녀 양육 방식의 결정에 미친 영향

(단위: %, Base: 64)



소득 수준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어린이집 대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고소득층의 경우 아이를 어린이집에 계속 보낼 의향이 커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

적으로 높았다. 즉, 가구소득이 199만 원 이하 및 200만~299만 원에 해당하는 가구의 경우 각각 50.0%, 61.5%가 가정양육 전환 의사를 보였으며, 500만~799만 원 및 8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가구의 경우 각각 78.6%, 60.0%가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낼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4-9〉 아동수당 도입이 자녀 양육 방식의 결정에 미친 영향(가구소득 수준별)

(단위: 가구, %)

구분		어린이집 유인	가정양육 유인	계
199만 원 이하	빈도	2	2	4
	비율	50.0	50.0	100.0
200만~299만 원	빈도	5	8	13
	비율	38.5	61.5	100.0
300만~399만 원	빈도	12	4	16
	비율	75.0	25.0	100.0
400만~499만 원	빈도	8	4	12
	비율	66.7	33.3	100.0
500만~799만 원	빈도	11	3	14
	비율	78.6	21.4	100.0
800만 원 이상	빈도	3	2	5
	비율	60.0	40.0	100.0
계	빈도	41	23	64
	비율	64.1	35.9	100.0

주: $\chi^2=6.2771$, $p\text{-value}=0.285$, 자녀 양육 방식의 결정에 관한 무응답 가구 제외.

이 결과에 따르면 아동수당 도입으로 인해 가구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는 가정양육으로 전환 또는 유지할 의향이 다소 클 수 있고, 가구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는 어린이집으로 전환 또는 유지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겠다. 단, p 값이 0.285로 소득 수준과 자녀 양육 방식의 결정 간 관계의 종속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아동 연령대별로 필요한 또는 요구되는 양육형태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가구소득 수준 대신 아동 연령대별로 응답 양상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만 0~2세 아동 가구의 경우 아동수당

64 아동수당 지급에 따른 영유아 보육서비스 이용 형태 분석

도입 후 어린이집으로 전환 또는 유지할 의향이 생겼다는 가구 비율이 52.8%, 가정양육으로 전환 또는 유지하겠다는 비율이 47.2%로 나타났다. 반면 만 3~5세의 경우, 어린이집으로 전환 또는 유지하겠다는 비율이 78.6%, 가정양육으로 전환 또는 유지하겠다는 비율이 2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만 0~2세 영아를 돌보는 가정의 경우 유아기 자녀 양육가구에 비해 아동수당 도입으로 인해 가정양육으로 전환 또는 유지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다(p값: 0.033).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아동수당 도입은 일부 부모에 대해서 어린이집 선택 유인을 가정양육에 비해 다소 크게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10〉 아동수당 도입이 자녀 양육 방식의 결정에 미친 영향(아동 연령대별)

(단위: 가구, %)

구분		어린이집 유인	가정양육 유인	계
만 3~5세	빈도	22	6	28
	비율	78.6	21.4	100.0
만 0~2세	빈도	19	17	36
	비율	52.8	47.2	100.0
계	빈도	41	23	64
	비율	64.1	35.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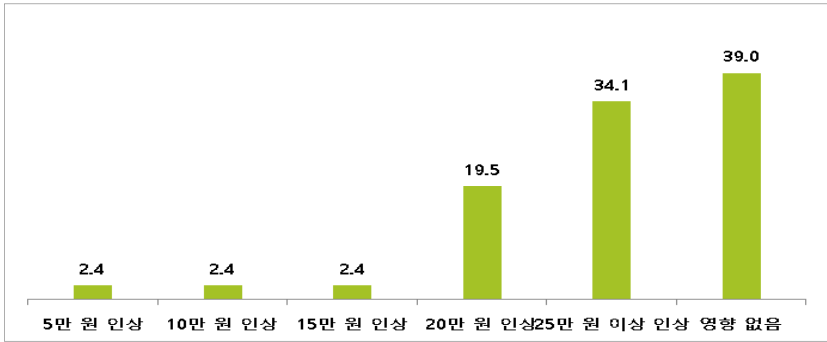
주: $\chi^2=4.5515$, $p\text{-value}=0.033$, 자녀 양육 방식 결정에 관한 무응답 가구 제외.

고제이, 고경표(2017) 등에 따르면 영아기 불필요한 어린이집 이용 현상은 사회후생 및 재정적 관점에서 봤을 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보육시설 지원 단가와 가정양육 지원 단가 간 높은 격차를 꼽을 수 있다. 특히 영아기 불필요한 보육시설 이용의 억제 기능으로서 작동하는 가정양육수당의 명목가치가 그간 불변이었다(고제이, 고경표, 2017, pp. 96-97)는 점을 고려해 보면, 가정양육수당 인상 등의 조정을 통해 왜곡된 정책 유인의 문제점이 다소간 해소되기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아동수당 도입이 어린이집 이용을 유인한다고 응답한 41가구들을 대상으로 가정양육수당을 얼마만큼 인상한다면 집에서 아이를 돌볼 의향이 생길 것인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이 39.0%로 나타났고, 25만 원 이상 인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이 34.1%로 나타났다.

[그림 4-10] 가정양육수당 인상과 가정양육 의향

(단위: %, Base: 41)



추가적으로 가정양육으로의 전환 또는 유지를 위해 가정양육수당 인상이 필요하다는 가구들을 대상으로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응답 분포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작은 표본 크기로 인해 뚜렷한 양상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고소득자들에 비해 가구소득이 낮거나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들에서 가정양육 전환(또는 유지)에 필요한 가정양육수당 인상액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p값: 0.064).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표본 크기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결과를 해석할 때 유의할 필요가 있다.

66 아동수당 지급에 따른 영유아 보육서비스 이용 행태 분석

〈표 4-11〉 가정양육수당 인상과 가정양육 전환(가구소득 수준별)

(단위: 가구, %)

구분		~10만 원	~20만 원	25만 원 이상	계
199만 원 이하	빈도	0	1	0	1
	비율	0.0	100.0	0.0	100.0
200만~299 만 원	빈도	0	2	2	4
	비율	0.0	50.0	50.0	100.0
300만~399 만 원	빈도	0	1	6	7
	비율	0.0	14.3	85.7	100.0
400만~499 만 원	빈도	0	2	3	5
	비율	0.0	40.0	60.0	100.0
500만~799 만 원	빈도	1	3	3	7
	비율	14.3	42.9	42.9	100.0
800만 원 이상	빈도	1	0	0	1
	비율	100.0	0.0	0.0	100.0
계	빈도	2	9	14	25
	비율	8.0	36.0	56.0	100.0

주: $\chi^2=17.5113$, $p\text{-value}=0.064$, 가정양육수당 인상 및 전환 관련 무응답 가구 제외.

다음으로 맞벌이 가구 여부별로 응답 분포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부모의 맞벌이 여부는 자녀 양육 방식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될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맞벌이 가구 중 가정양육 전환 또는 유지에 필요한 인상분으로 25만 원 이상을 택한 가구들의 비율이 71.4%로 높게 나타났다. 외벌이의 경우 25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 비율은 36.4%로 맞벌이 가구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즉, 외벌이 가구에 비해 가정양육에 대한 기회비용이 큰 맞벌이 가구의 양육수당 인상 요구액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p\text{-값}$: 0.0029).

〈표 4-12〉 가정양육수당 인상과 가정양육 전환(맞벌이 여부별)

(단위: 가구, %)

구분		~10만 원	~20만 원	25만 원 이상	계
맞벌이	빈도	2	2	10	14
	비율	14.3	14.3	71.4	100.0
아빠 외벌이	빈도	0	7	4	11
	비율	0.0	63.6	36.4	100.0
계	빈도	2	9	14	25
	비율	8.0	36.0	56.0	100.0

주: $\chi^2=7.0913$, $p\text{-value}=0.029$, 가정양육수당 인상 및 전환 관련 무응답 가구 제외.



제 5 장

자녀 양육 지원 정책에 대한 부모 인식

제1절 아동수당제도의 개인적·사회적 영향에 관한 인식

제2절 아동수당 및 자녀 양육 지원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인식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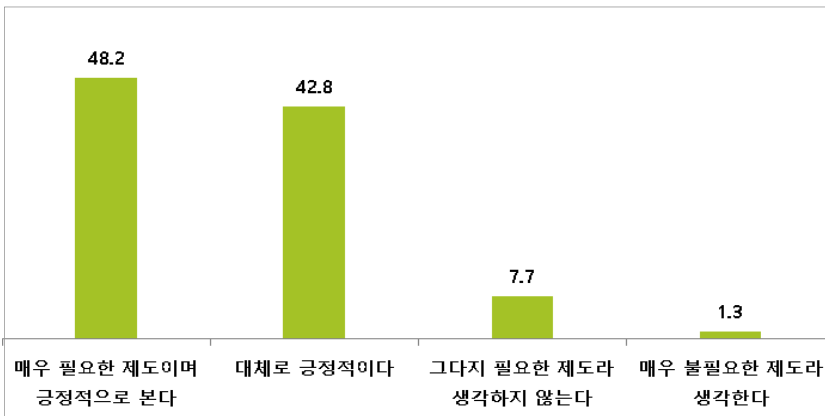
자녀 양육 지원 정책에 대한 << 부모 인식

제1절 아동수당제도의 개인적·사회적 영향에 관한 인식

아동수당제도는 아동에게 매월 소정의 현금을 지급하여 이들을 양육하는 가구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 주는 소득보장제도이다.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이 아동수당의 지급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자녀 양육 행태에 일정 수준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 나아가 개인들의 자녀 출산에 대한 선택이나 교육 등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사회 통합과 같은 다양한 측면들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조사 가구들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제도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효과에 관한 인식을 살펴본다.

[그림 5-1] 아동수당제도의 필요성

(단위: %, Base: 600)



72 아동수당 지급에 따른 영유아 보육서비스 이용 행태 분석

먼저 전체 조사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수당제도의 필요성 및 긍정적 측면의 정도를 물어본 결과, 응답 가구의 91.0%가 아동수당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나머지 9.0%는 아동수당제도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가구소득 수준별로 보아도 응답 가구 대부분이 아동수당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가운데, 가구소득 수준이 증가할수록 긍정 정도는 소폭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p값: 0.0078).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수급 여부를 구분해서 보면 소득 기준 초과로 수급이 배제된 미수급 가구에서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부정 의견을 보였다는 점이다(p값: 0.0048).

〈표 5-1〉 아동수당제도의 필요성(가구소득 수준별)

(단위: 가구, %)

구분		필요	불필요	계
199만 원 이하	빈도	15	0	15
	비율	100.0	0.0	100.0
200만~299만 원	빈도	78	7	85
	비율	91.8	8.2	100.0
300만~399만 원	빈도	149	7	156
	비율	95.5	4.5	100.0
400만~499만 원	빈도	124	13	137
	비율	90.5	9.5	100.0
500만~799만 원	빈도	150	23	173
	비율	86.7	13.3	100.0
800만 원 이상	빈도	27	4	31
	비율	87.1	12.9	100.0
계	빈도	543	54	597
	비율	91.0	9.1	100.0

주: 1) $\chi^2=9.8900$, $p\text{-value}=0.078$, 가구소득 무응답 가구 제외.

2) 소득 무응답 3가구로 인해 본문의 600가구 기준 응답률과 소폭의 차이가 있음.

〈표 5-2〉 아동수당제도의 필요성(아동수당 수급 여부별)

(단위: 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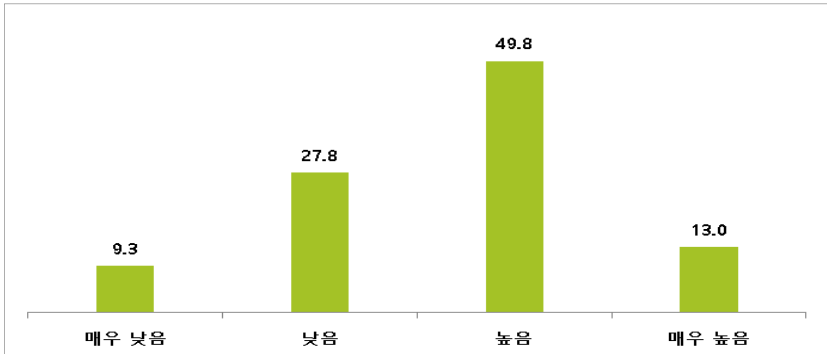
구분		필요	불필요	계
아동수당 수급	빈도	524	47	571
	비율	91.8	8.2	100.0
아동수당 미수급	빈도	22	7	29
	비율	75.9	24.1	100.0
계	빈도	546	54	600
	비율	91.0	9.0	100.0

주: $\chi^2=8.5263$, $p\text{-value}=0.0048$.

다음으로 아동수당의 자녀 양육 부담 완화 효과와 관련하여, 전체 조사 가구의 62.8%가 그 완화 효과가 높거나 매우 높다고 응답하였다. 27.8%는 그 효과가 낮다고 응답하였고, 9.3%는 매우 낮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5-2] 아동수당의 자녀 양육 부담 완화 효과

(단위: %, Base: 600)



자녀 양육 부담 완화 효과가 높다는 데에는 응답 가구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대부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값: 0.643). 즉, 모든 가구소득 구간에서 완화 효과가 크다고 응답한 가구 비율이 그 효과가 작다고 응답한 가구 비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74 아동수당 지급에 따른 영유아 보육서비스 이용 형태 분석

〈표 5-3〉 아동수당의 자녀 양육 부담 완화 효과(가구소득 수준별)

(단위: 가구, %)

구분		완화 효과 큼	완화 효과 작음	계
199만 원 이하	빈도	10	5	15
	비율	66.7	33.3	100.0
200만~299 만 원	빈도	54	31	85
	비율	63.5	36.5	100.0
300만~399 만 원	빈도	106	50	156
	비율	68.0	32.1	100.0
400만~499 만 원	빈도	80	57	137
	비율	58.4	41.6	100.0
500만~799 만 원	빈도	105	68	173
	비율	60.7	39.3	100.0
800만 원 이상	빈도	19	12	31
	비율	61.3	38.7	100.0
계	빈도	374	223	597
	비율	62.7	37.4	100.0

주: 1) $\chi^2=3.3710$, $p\text{-value}=0.643$, 가구소득 무응답 가구 제외.

2) 소득 무응답 3가구로 인해 본문의 600가구 기준 응답률과 소폭의 차이가 있음.

한편, 성남시의 경우를 보면, 응답 가구 중 양육 부담 완화 효과가 크다고 응답한 비율은 76.9%로 이는 그 외 지역 응답률 62.5%보다 높은 수치이다. 즉, 성남시 가구들은 상대적으로 아동수당이 자녀 양육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여기고 있었다(물론 p 값은 크지 않았으며, 성남시 표본 크기가 작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표 5-4〉 아동수당의 자녀 양육 부담 완화 효과(성남시 거주 여부별)

(단위: 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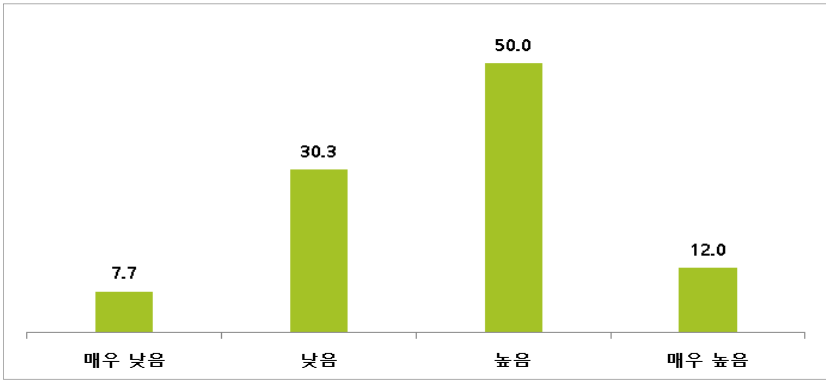
구분		완화 효과 큼	완화 효과 작음	계
그 외	빈도	367	220	587
	비율	62.5	37.5	100.0
성남시	빈도	10	3	13
	비율	76.9	23.1	100.0
계	빈도	377	223	600
	비율	62.8	37.2	100.0

주: $\chi^2=1.1296$, $p\text{-value}=0.288$

다음으로 아동수당의 미래 세대에 대한 (저축 등으로 인한) 투자 효과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는 투자 효과가 크다고 응답한 가구 비율이 62.0%, 투자 효과가 작다고 응답한 가구 비율이 38.0%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3] 아동수당의 미래 세대 투자 효과

(단위: %, Base: 600)



아동수당의 자녀 양육 부담 완화 효과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조사 대상 가구들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아동수당제도의 미래 세대 투자 효과가 큰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p값: 0.942).

76 아동수당 지급에 따른 영유아 보육서비스 이용 행태 분석

〈표 5-5〉 아동수당의 미래 세대 투자 효과(가구소득 수준별)

(단위: 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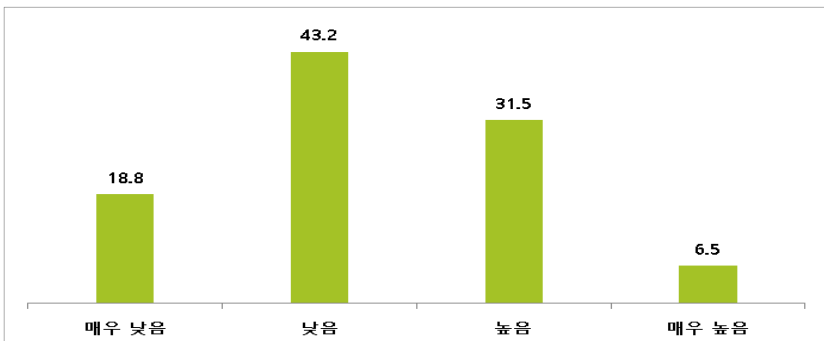
구분		낮음	높음	계
199만 원 이하	빈도	5	10	15
	비율	33.3	66.7	100.0
200만~299만 원	빈도	34	51	85
	비율	40.0	60.0	100.0
300만~399만 원	빈도	55	101	156
	비율	35.3	64.7	100.0
400만~499만 원	빈도	52	85	137
	비율	38.0	62.0	100.0
500만~799만 원	빈도	69	104	173
	비율	39.9	60.1	100.0
800만 원 이상	빈도	13	18	31
	비율	41.9	58.1	100.0
계	빈도	228	369	597
	비율	38.2	61.8	100.0

주: $\chi^2=1.2344$, $p\text{-value}=0.942$, 가구소득 무응답 가구 제외.

아동수당의 선별 지급으로 인한 불편과 사회 갈등 발생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불편과 사회 갈등 발생 정도가 낮거나 매우 낮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은 62.0%로 나타났고, 발생 정도가 높거나 매우 높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은 38.0%로 나타났다.

〔그림 5-4〕 선별 지급으로 인한 불편과 사회 갈등 발생

(단위: %, Base: 600)



가구소득 수준별로 세부 조사한 결과, 대체로 가구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일수록 선별 지급으로 인한 불편과 사회 갈등 발생 정도가 낮다고 응답하였고, 가구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일수록 그 정도가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즉, 선별 지급에 대한 부정적 의견은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값: 0.097).

〈표 5-6〉 선별 지급으로 인한 불편과 사회 갈등 발생(가구소득 수준별)

(단위: 가구, %)

구분		낮음	높음	계
199만 원 이하	빈도	9	6	15
	비율	60.0	40.0	100.0
200만~299만 원	빈도	63	22	85
	비율	74.1	25.9	100.0
300만~399만 원	빈도	87	69	156
	비율	55.8	44.2	100.0
400만~499만 원	빈도	89	48	137
	비율	65.0	35.0	100.0
500만~799만 원	빈도	104	69	173
	비율	60.1	39.9	100.0
800만 원 이상	빈도	17	14	31
	비율	54.8	45.2	100.0
계	빈도	369	228	597
	비율	61.8	38.2	100.0

주: 1) $\chi^2=9.3127$, $p\text{-value}=0.097$, 가구소득 무응답 가구 제외.

2) 소득 무응답 3가구로 인해 본문의 600가구 기준 응답률과 소폭의 차이가 있음.

예상과 같이 선별 지급에 대한 부정적 의견은 미수급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p값: 0.051).

78 아동수당 지급에 따른 영유아 보육서비스 이용 행태 분석

〈표 5-7〉 선별 지급으로 인한 불편과 사회 갈등 발생(아동수당 수급 여부별)

(단위: 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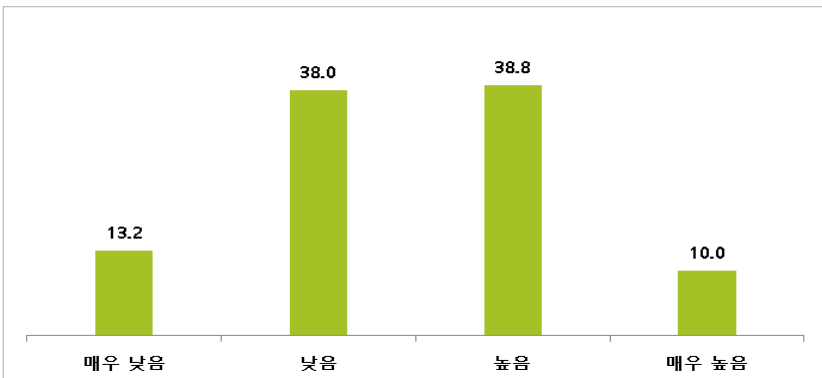
구분		낮음	높음	계
아동수당 수급	빈도	359	212	571
	비율	62.9	37.1	100.0
미수급	빈도	13	16	29
	비율	44.8	55.2	100.0
계	빈도	372	228	600
	비율	62.0	38.0	100.0

주: $\chi^2=3.8142$, $p\text{-value}=0.051$.

한편, 아동수당이 아이를 같이 키우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를 물어보았을 때, 효과가 높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은 48.8%였고, 효과가 낮다는 의견은 51.2%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연령이 영유아에 한정되어 있고 조사 시점 당시 선별 지급으로 일부 아동들이 제도의 혜택에서 배제되는 제도의 한계와 더불어 아동수당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림 5-5] 아동수당의 아이를 같이 키우는 사회 분위기 조성 효과

(단위: %, Base: 600)



가구소득 수준별로 살펴보면,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 분위기 조성 효과가 높다고 응답한 가구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그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p값 0.582).

〈표 5-8〉 아동수당의 아이를 같이 키우는 사회 분위기 조성 효과(가구소득 수준별)

(단위: 가구, %)

구분		낮음	높음	계
199만 원 이하	빈도	9	6	15
	비율	60.0	40.0	100.0
200만~299만 원	빈도	48	37	85
	비율	56.5	43.5	100.0
300만~399만 원	빈도	82	74	156
	비율	52.6	47.4	100.0
400만~499만 원	빈도	72	65	137
	비율	52.6	47.5	100.0
500만~799만 원	빈도	80	93	173
	비율	46.2	53.8	100.0
800만 원 이상	빈도	14	17	31
	비율	45.2	54.8	100.0
계	빈도	305	292	597
	비율	51.1	48.9	100.0

주: $\chi^2=3.7774$, $p\text{-value}=0.582$, 가구소득 무응답 가구 제외.

부모의 경제활동 유형별로 구분해서 보면,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에 비해 아동수당제도의 양육 부담의 사회화 효과가 크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조사 가구 중 맞벌이 가구의 경우, 효과가 크다고 응답한 가구 비율이 52.8%인 반면, 외벌이 가구의 경우 효과가 크다고 응답한 가구 비율은 아빠 외벌이 가구가 45.4%, 엄마 외벌이 가구가 28.6%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p값이 0.144로 그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 5-9〉 아동수당의 아이를 같이 키우는 사회 분위기 조성 효과(맞벌이 여부별)

(단위: 가구, %)

구분		낮음	높음	계
맞벌이	빈도	135	151	286
	비율	47.2	52.8	100.0
아빠 외벌이	빈도	167	139	306
	비율	54.6	45.4	100.0
엄마 외벌이	빈도	5	2	7
	비율	71.4	28.6	100.0
부모 무직	빈도	0	1	1
	비율	0.0	100.0	100.0
계	빈도	307	293	600
	비율	51.2	48.8	100.0

주: $\chi^2=5.4192$, $p=0.1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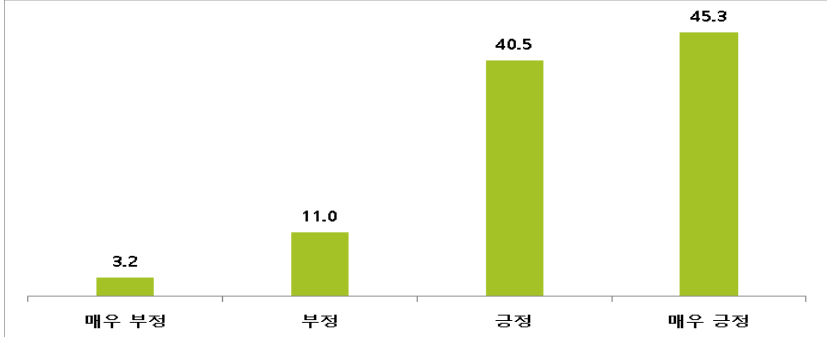
제2절 아동수당 및 자녀 양육 지원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인식

다음으로 자녀 양육 정책과 관련하여 개선 사항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현재 아동수당제도는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점을 논하는 것은 다소 이른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동 제도의 사회적 영향력이 결코 작지 않다는 점에서 수급자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은 정책적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연령 확대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조사 시점 당시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 만 0~5세에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이에 대해 응답 가구의 45.3%는 매우 긍정, 40.5%는 긍정이라고 답하여 전체 조사 가구 대부분(85.8%)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 확대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가구소득 수준, 아동 연령, 맞벌이 여부 등에 관계없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미수급 가구의 경우 긍정과 강한 긍정이 각각 31%와 44.8%로 확인되었다.

[그림 5-6]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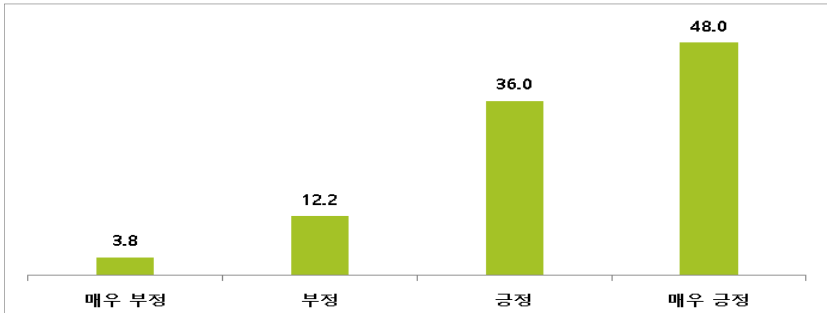
(단위: %, Base: 600)



다음으로 아동수당 금액 인상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았을 때, 매우 긍정 및 긍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8.0%, 36.0%로 총 84.0%인 것으로 나타나 응답 가구 대부분이 아동수당 금액의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아래 표에서처럼 이러한 경향은 가구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소득계층에서 확인되었고, 아동수당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인상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7] 아동수당 금액 인상에 대한 생각

(단위: %, Base: 600)



82 아동수당 지급에 따른 영유아 보육서비스 이용 행태 분석

〈표 5-10〉 아동수당 금액 인상에 대한 생각(가구소득 수준별)

(단위: 가구, %)

구분		부정	긍정	계
199만 원 이하	빈도	0	15	15
	비율	0.0	100.0	100.0
200만~299 만 원	빈도	15	70	85
	비율	17.7	82.4	100.0
300만~399 만 원	빈도	20	136	156
	비율	12.8	87.2	100.0
400만~499 만 원	빈도	21	116	137
	비율	15.3	84.7	100.0
500만~799 만 원	빈도	33	140	173
	비율	19.1	80.9	100.0
800만 원 이상	빈도	6	25	31
	비율	19.4	80.7	100.0
계	빈도	95	502	597
	비율	15.9	84.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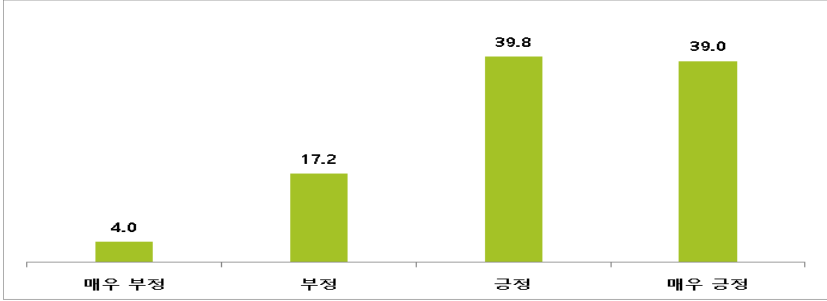
주: 1) $\chi^2=5.7469$, $p\text{-value}=0.332$, 가구소득 무응답 가구 제외.

2) 소득 무응답 3가구로 인해 본문의 600가구 기준 응답률과 소폭의 차이가 있음.

한편, 정책의 출산 유인 기능 강화를 위해서 출생 순위(또는 자녀 수)가 증가할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차등 지급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이 39%,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이 39.8%로 나타나 전체 가구의 78.8%가 출산 유인 강화를 위해서는 아동수당을 출생 순위나 자녀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는 가구소득 수준이나 아동수당 지급 여부 등과 관계없이 확인되는 경향이라 할 수 있다. 한편, 1자녀 가구와 0세아 가구에서 출생 순위별 차등 지급에 대한 긍정 의견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해당 부분과 관련된 정책적 개입의 여지가 없지 않음을 시사한다. 향후 보다 충분한 실적 자료를 토대로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그림 5-8] 출생 순위별 차등 지급에 대한 생각

(단위: %, Base: 600)



(표 5-11) 출생 순위별 차등 지급에 대한 필요성(가구소득 수준별)

(단위: 가구, %)

구분		긍정	부정	계
199만 원 이하	빈도	13	2	15
	비율	86.7	13.3	100.0
200만~299만 원	빈도	68	17	85
	비율	80.0	20.0	100.0
300만~399만 원	빈도	123	33	156
	비율	78.9	21.2	100.0
400만~499만 원	빈도	111	26	137
	비율	81.0	19.0	100.0
500만~799만 원	빈도	131	42	173
	비율	75.7	24.3	100.0
800만 원 이상	빈도	24	7	31
	비율	77.4	22.6	100.0
계	빈도	470	127	597
	비율	78.7	21.3	100.0

주: 1) $\chi^2=2.0431$, $p\text{-value}=0.843$, 가구소득 무응답 가구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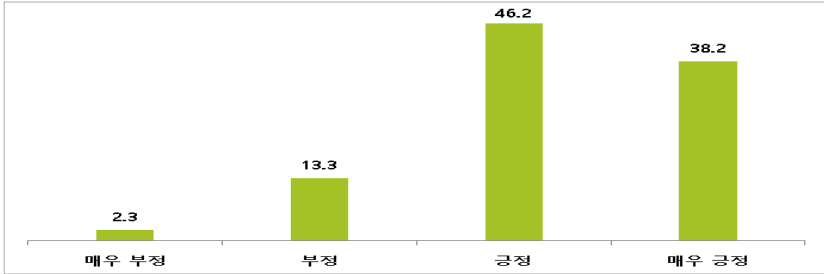
2) 소득 무응답 3가구로 인해 본문의 600가구 기준 응답률과 소폭의 차이가 있음.

한편, 가정양육수당 금액 인상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금액 인상을 긍정 또는 매우 긍정하는 가구의 비율이 84.4%, 금액 인상에 대해 부정 또는 매우 부정적인 가구의 비율은 15.6%로 나타났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는 가구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관찰되는 경향이라 할 수 있다.

84 아동수당 지급에 따른 영유아 보육서비스 이용 행태 분석

[그림 5-9] 가정양육수당 금액 인상에 대한 생각

(단위: %, Base: 600)



<표 5-12> 가정양육수당 금액 인상에 대한 생각(가구소득 수준별)

(단위: 가구, %)

구분		부정	긍정	계
199만 원 이하	빈도	0	15	15
	비율	0.0	100.0	100.0
200만~299만 원	빈도	14	71	85
	비율	16.5	83.5	100.0
300만~399만 원	빈도	19	137	156
	비율	12.2	87.8	100.0
400만~499만 원	빈도	20	117	137
	비율	14.6	85.4	100.0
500만~799만 원	빈도	36	137	173
	비율	20.8	79.2	100.0
800만 원 이상	빈도	4	27	31
	비율	12.9	87.1	100.0
계	빈도	93	504	597
	비율	15.6	84.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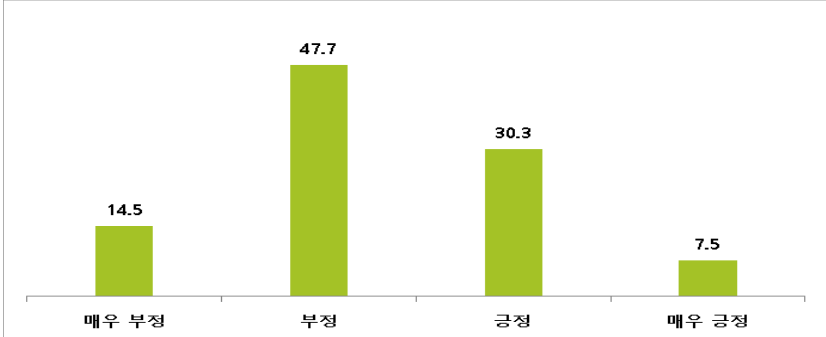
주: 1) $\chi^2=8.0579$, $p\text{-value}=0.153$, 가구소득 무응답 가구 제외.

2) 소득 무응답 3가구로 인해 본문의 600가구 기준 응답률과 소폭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이어서 육아휴직자 급여 인상을 전제로 한 육아휴직자의 어린이집 이용 제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에 대해 ‘부정’이라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이 47.7%로 나타났고, ‘매우 부정’이라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이 14.5%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의 62.2%가량이 육아휴직자의 어린이집 이용 제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알 수 있다.

[그림 5-10] 육아휴직자의 어린이집 이용 제한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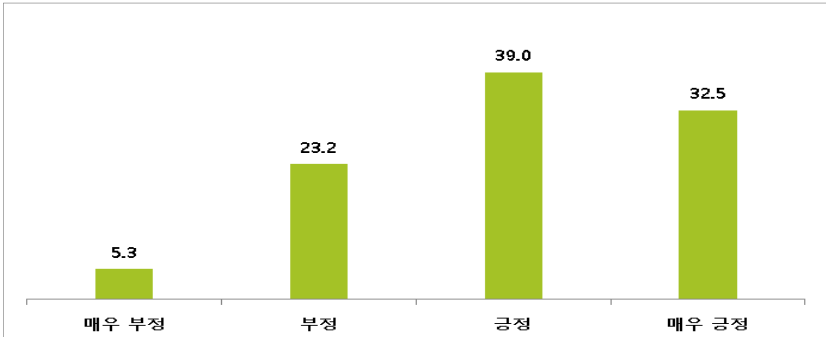
(단위: %, Base: 600)



시설로 지급되는 보육료 지원금을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대해 긍정 또는 매우 긍정이라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이 71.5%로 나타났으며, 부정 또는 매우 부정이라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은 28.5%로 나타났다.

[그림 5-11] 시설보육료 지원금을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대한 생각

(단위: %, Base: 600)





제 6 장

아동수당 도입 전후 양육 행태와 정책 인식의 변화

- 제1절 아동수당제도 도입과 자녀 양육 행태의 변화
- 제2절 아동수당제도의 정책 영향에 관한 인식 변화
- 제3절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선호 변화와 변화 요인
- 제4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6

아동수당 도입 이후 양육 << 행태와 정책 인식의 변화

전술한 바와 같이 2017년 7월 본 연구의 선행연구에서 아동수당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자녀 양육 정책에 대한 인식, 아동수당제도의 기능과 필요성, 보육 및 가정양육 행태에 관한 조사를 수행한 바 있다. 2018년 설문조사에서는 2017년의 표본 가구들을 추적하여 아동수당 신청과 수급, 양육 행태 변화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수당제도 시행 전후로 제도 인식이나 자녀 양육 행태에 대한 변화를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8년 추적 조사에 성공한 가구 수는 총 335가구이다. 즉, 335가구에 대해 2017년 및 2018년 두 번 조사가 이뤄진 셈이므로 총 표본 크기는 670개이다. 추적 조사의 장점은 개인 또는 집단적 특성이 유사한 이들을 대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수당제도 도입과 같은 정책 충격에 따른 인식의 변화를 파악하기가 용이하다는 것이다.⁵⁾

제1절 아동수당제도 도입과 자녀 양육 행태의 변화

먼저 추적 조사 가구들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이 자녀 양육 방식에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제도 도입 전후로 인식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자. 2017년 기준, 아동수당 수급이 자녀 양육 방식에 영향을

5) 본 연구는 아동수당제도 도입과 관련한 적절한 대조군을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보다 엄밀한 분석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의 두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에 비해 본 연구의 분석이 많은 장점을 갖는다고 판단된다.

90 아동수당 지급에 따른 영유아 보육서비스 이용 행태 분석

줄 것이라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은 14.6%이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은 85.4%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8년에는 영향이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10.8%, 영향이 없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89.3%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제 제도가 시행되고 난 이후 영향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이 소폭 상승하였다. 단, p값은 0.13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추적 조사 가구들은 제도 도입 전이나 도입 후 모두에서 양육 방식에 있어 아동수당의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표 6-1〉 자녀 양육 방식에 아동수당이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

(단위: 가구, %)

구분		2017년	2018년	계
그렇다	빈도	49	36	85
	비율	14.6	10.8	12.7
아니다	빈도	286	299	585
	비율	85.4	89.3	87.3
계	빈도	335	335	670
	비율	100.0	100.0	100.0

주: 1) $\chi^2=2.771$, p-value=0.131.

2) 2017년 응답률은 고제이, 고경표(2017)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산.

그런데 2017년 설문조사 당시 아동들은 만 0~2세였으며 1년이 지난 2018년 시점에서는 아동들의 연령이 증가했고, 새로 태어난 아동들도 있을 수 있다. 이때 연령별로 요구되는 양육 및 보육의 행태가 다를 수 있으며 아동수당 수급과 관계없이 자녀 양육에 관한 부모들의 선호와 행태에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⁶⁾ 즉, 이러한 연령 효과를 적절

6) 사실 연령 외에도 제도 도입과 관계없이 시간 흐름에 따라 개개인의 인적·사회경제적 특성에 여러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며, 엄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이를 적절히 통제해 줄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통제를 목적으로 표본을 제한하는 것은 또 다른 계량경제학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추후 방법론적인 보완을 통해 분석의 엄밀성을 강화하고자 하

히 통제해 줄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통제 기법이 사용될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분석의 대상을 2018년 만 0~2세 아동 기준으로 제한하는 방식을 취했다. 아래 표에는 위와 동일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아래 표에서 보면, 2018년의 응답 분포가 앞선 경우와 약간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즉, 2018년 기준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이 10.8%(연령 효과 통제 전)에서 12.9%(연령 효과 통제 후)로 소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연령 효과를 통제해 주어도 p값이 여전히 높았다. 즉, 자녀 양육 방식과 아동수당 도입에 관한 가구 인식은 제도 도입 전후로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표 6-2〉 자녀 양육 방식 결정에 아동수당이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아동 연령 만 0~2세 가구로 제한)

(단위: 가구, %)

구분		2017년	2018년	계
그렇다	빈도	49	25	74
	비율	14.6	12.9	14.0
아니다	빈도	286	169	455
	비율	85.4	87.1	86.0
계	빈도	335	194	529
	비율	100.0	100.0	100.0

주: 1) $\chi^2=0.3092$, $p\text{-value}=0.578$, 만 3~5세 제외.

2) 2017년 응답률은 고제이, 고경표(2017)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산.

위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번에는 아동수당이 자녀 양육 방식의 결정에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를 대상으로 제도 도입 전후의 영향을 비교해 보았다. 먼저 아래의 추적 조사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를 살

며, 본 연구의 부록에서 다양한 형태의 요인들을 통제해 줄 수 있는 몇 가지 모형에 기초한 분석 결과를 간단히 제시하였다.

92 아동수당 지급에 따른 영유아 보육서비스 이용 행태 분석

해보면, 어린이집 유인 비율이 2017년 46.9%에서 2018년 58.3%로 약 11.4%포인트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로부터 아동수당이 실제 도입됨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선호도가 커졌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대로 2017년의 표본들은 만 0~2세 아동만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분석 대상의 제한을 통해 연령 효과를 일정 수준 통제해 준 결과, 2018년 기준 어린이집 유인 비율은 52%로 연령 통제 전에 비해 6.3%포인트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18년에는 어린이집 유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6-3〉 아동수당이 자녀 양육 방식의 결정에 미친 영향

(단위: 가구, %)

구분		2017년	2018년	계
어린이집 유인	빈도	23	21	44
	비율	46.9	58.3	51.8
가정양육 유인	빈도	26	15	41
	비율	53.1	41.7	48.2
계	빈도	49	36	85
	비율	100.0	100.0	100.0

주: 1) $\chi^2=1.0791$, $p\text{-value}=0.299$.

2) 2017년 응답률은 고제이, 고경표(2017)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산.

〈표 6-4〉 아동수당이 자녀 양육 방식의 결정에 미친 영향(아동 연령 만 0~2세 가구로 제한)

(단위: 가구, %)

구분		2017년	2018년	계
어린이집 유인	빈도	23	13	36
	비율	46.9	52.0	48.7
가정양육 유인	빈도	26	12	38
	비율	53.1	48.0	51.4
계	빈도	49	25	74
	비율	100.0	100.0	100.0

주: 1) $\chi^2=0.1697$, $p\text{-value}=0.680$, 만 3~5세 가구 제외.

2) 2017년 응답률은 고제이, 고경표(2017)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산.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이지만 표본의 한계를 고려했을 때, 아동수당 지급이 불필요한 어린이집 이용을 통제하는 가정양육수당의 문턱 효과를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을 전면 부정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서 아동수당 도입에 의해 현재 양육 방식을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응답자의 비율을 연령별로 구하여 2017년의 조사 결과(고제이, 고경표, 2017)와 대비하여 비교하였다(〈표 6-5〉 참조).

〈표 6-5〉 아동수당 수급 가구의 양육 방식 전환 비율

연령	2017년				2018년			
	전체 가구 ¹⁾		추적 조사 가구 기준 ²⁾		전체 가구 ³⁾		추적 조사 가구 기준 ⁴⁾	
	시설→가정	가정→시설	시설→가정	가정→시설	시설→가정	가정→시설	시설→가정	가정→시설
0세	0.0588	0.0886	0.0385	0.1071	0.0000	0.0678	0.0000	0.1379
1세	0.0582	0.1031	0.0769	0.0959	0.0000	0.0267	0.0000	0.0000
2세	0.0456	0.1067	0.0746	0.1515	0.0192	0.0000	0.0200	0.0000
3세 이상	-	-	-	-	0.0179	0.0000	0.0153	0.0000

주: 1) 고제이, 고경표(2017, p. 109).

2) 추적 가구 2017년 응답 기준. 고제이, 고경표(2017)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산.

3) 2018년 조사 가구 전체

4) 추적 가구 2018년 응답

전체 조사 가구를 기준으로 2017년과 2018년의 조사 결과를 직접 비교해서 보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0~1세의 가정양육 전환 의사는 이전과 달리 확인되지 않았다.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 중에 있는 부모들의 시설보육 전환 비율 또한 이전 조사에 비해 전체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한편, 추적 조사 가구에 한정하여 제도 도입 전과 실제 수급 이후의 전환 비율을 보았을 때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선호가 보다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0세 영아를 가정에서 양육 중인 가구들의 경우 보육시설로의 전환 비율이 다소 높아졌는데, 이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 자녀 부모들이 느끼는 보육시설 이용의 문턱을 아동수당 지급을 통해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제2절 아동수당제도의 정책 영향에 관한 인식 변화

아동수당과 자녀 양육 부담 완화에 관한 인식 변화를 살펴보면, 2017년 기준 아동수당 도입에 따라 양육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은 45.7%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2018년 58.2%로 약 12.5%포인트 증가하였다. 또한 p값이 0.001로 통계적으로도 상당히 유의미하였다.

연령 효과를 통제해 주어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분석 대상들만 0~2세로 제한한 결과, 2018년 기준 자녀 양육 부담 완화 정도가 크다고 본 가구의 비율은 60.3%로 앞선 표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 p값도 0.001로 나타나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하였다. 요컨대 추적조사 가구들은 아동수당의 자녀 양육 부담 완화 효과를 제도 도입 전 기대했던 것보다 도입 후 더 크게 체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6-6〉 아동수당이 자녀 양육 부담 완화에 미친 영향

(단위: 가구, %)

구분		2017년	2018년	계
완화	빈도	153	195	348
	비율	45.7	58.2	51.9
그렇지 않음	빈도	182	140	322
	비율	54.3	41.8	48.1
계	빈도	335	335	670
	비율	100.0	100.0	100.0

주: 1) $\chi^2=10.5472$, $p\text{-value}=0.001$

2) 2017년 응답률은 고제이, 고경표(2017)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산.

〈표 6-7〉 아동수당이 자녀 양육 부담 완화에 미친 영향(아동 연령 만 0~2세 가구로 제한)

(단위: 가구, %)

구분		2017년	2018년	계
완화	빈도	153	117	270
	비율	45.7	60.3	51.0
그렇지 않음	빈도	182	77	259
	비율	54.3	39.7	49.0
계	빈도	335	194	529
	비율	100.0	100.0	100.0

주: 1) $\chi^2=10.5337$, $p\text{-value}=0.001$, 만 3~5세 가구 제외.

2) 2017년 응답률은 고제이, 고경표(2017)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산.

다음으로 아동수당과 자녀 출산 문제에 관한 인식의 변화를 보면, 2017년 아동수당이 자녀 출산 선택에 긍정적일 수 있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은 31.3%였다. 그러나 아동수당제도가 시행된 2018년에는 이 비율이 11.6%로 20%포인트 가량 감소하였다.

연령 효과를 일부 통제해 주어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제도 도입 전 자녀 출산 문제에 대해서 아동수당이 직접적인 유인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인식은 제도가 시행되면서 더욱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p\text{-값}: 0.000$).

이러한 결과는 체감하는 출산 유인에 대한 응답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동안 아동수당제도의 도입 목적이 출산율의 직접적인 제고를 위한 저출산 대책이 아니라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고 기본 권리를 증진하는 데에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고 그에 대한 부모들의 정책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진 결과라고도 해석될 수 있다.

96 아동수당 지급에 따른 영유아 보육서비스 이용 행태 분석

〈표 6-8〉 아동수당이 자녀 출산 결정이나 계획에 미친 긍정적 영향

(단위: 가구, %)

구분		2017년	2018년	계
긍정적 영향 있음	빈도	105	39	144
	비율	31.3	11.6	21.5
긍정적 영향 없음	빈도	230	296	526
	비율	68.7	88.4	78.5
계	빈도	335	335	670
	비율	100.0	100.0	100.0

주: 1) $\chi^2=38.5314$, $p\text{-value}=0.000$

2) 2017년 응답률은 고제이, 고경표(2017)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산.

〈표 6-9〉 아동수당이 자녀 출산 결정이나 계획에 미친 긍정적 영향(아동 연령 만 0~2세 가구로 제한)

(단위: 가구, %)

구분		2017년	2018년	계
긍정적 영향 있음	빈도	105	27	132
	비율	31.3	13.9	25.0
긍정적 영향 없음	빈도	230	167	397
	비율	68.7	86.1	75.1
계	빈도	335	194	529
	비율	100.0	100.0	100.0

주: $\chi^2=19.9215$, $p\text{-value}=0.000$, 만 3~5세 가구 제외.

제3절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선호 변화와 변화 요인

1. 자녀 양육 지원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인식 변화

한편, 출산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출생 순위가 높을수록 또는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지원되는 금액이 더 커져야한다는 의견을 살펴보면, 2017년 77.3%에서 2018년 77.9%로 서로 큰 차이가 없었다. 즉 제도 도입 전후와 관계없이 조사 가구들은 제도가 자녀 출산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출생 순위별 차등 지원의 필요성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었다(p값 0.853). 이러한 분석 결과는 연령 효과를 통제해도 마찬가지였다. 앞서의 출산 유인 효과에 대한 응답과 함께 해석해 보면, 현재 자녀 양육 전체 기간 중에서 영유아기에 한정하여 자녀 수와 관계없이 균등한 금액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제도가 출산 유인까지 제공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표 6-10〉 출생 순위별 차등 지원의 필요성

(단위: 가구, %)

구분		2017년	2018년	계
필요	빈도	259	261	520
	비율	77.3	77.9	77.6
불필요	빈도	76	74	150
	비율	22.7	22.1	22.4
계	빈도	335	335	670
	비율	100.0	100.0	100.0

주: 1) $\chi^2=0.0344$, $p\text{-value}=0.853$

2) 2017년 응답률은 고제이, 고경표(2017)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산.

〈표 6-11〉 출생 순위별 차등 지원의 필요성(아동 연령 만 0~2세 가구로 제한)

(단위: 가구, %)

구분		2017년	2018년	계
필요	빈도	259	152	411
	비율	77.3	78.4	77.7
불필요	빈도	76	42	118
	비율	22.7	21.7	22.3
계	빈도	335	194	529
	비율	100.0	100.0	100.0

주: 1) $\chi^2=0.0762$, $p\text{-value}=0.782$, 만 3~5세 가구 제외.

2) 2017년 응답률은 고제이, 고경표(2017)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산.

다음으로 보육 지원 체계의 개선 사항에 관한 의견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자. 7) 2017년 당시 조사 가구들을 대상으로 보육 지원 체계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질문한 적이 있었다. 아래 표는 2018년 추적 조사가 이루어진 가구들만을 추출하여 그 응답 분포를 제시한 것이다. 표를 보면, 부모들은 보육료 직접 지급(28.7%), 가정양육수당 인상(28.4%)을 개선 우선순위로 꼽았다. 다음으로 현행 보육 체계 유지(26.0%), 육아휴직자 어린이집 이용 제한(11.0%) 순이었다.

〈표 6-12〉 2017년 당시 보육 지원 체계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추적 가구 대상)

(단위: 가구, %)

구분	빈도	비율
가정양육수당 인상	95	28.4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전제로 육아휴직 시 어린이집 이용 제한	37	11.0
보육료 부모에게 직접 지급	96	28.7
현행 보육 체계 유지	87	26.0
기타	20	6.0
계	335	100.0

주: 고제이, 고경표(2017)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산.

7) 이하 조사 내용들의 경우 2017년과 2018년 질문 형태가 상이하여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하였다.

2018년 조사에서 가정양육수당 인상, 육아휴직자 어린이집 이용 제한, 보육료 직접 지급에 관한 재조사 가구의 응답 결과를 보면, 가정양육수당 인상에 대한 긍정 또는 매우 긍정 비율은 약 80.6%, 육아휴직자 어린이집 이용 제한에 대한 긍정 또는 매우 긍정 비율은 36.4%, 보육료 직접 지급에 대한 긍정 또는 매우 긍정 비율은 70.4%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육료 체계 개선에 있어 2018년도에도 전년과 유사하게 가정양육수당의 인상과 부모에게 직접 보육료를 지급하는 방식에서의 개편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13〉 2018년 보육 지원 체계 개선 관련 조사 결과(추적 가구 대상)

(단위: 가구, %)

구분	필요		불필요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가정양육수당 인상	270	80.6	65	19.4	335	100.0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전제로 육아휴직 시 어린이집 이용 제한	112	36.4	213	63.6	335	100.0
보육료 부모에게 직접 지급	236	70.4	99	29.6	335	100.0

2.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선호 변화와 변화 요인

가. 가정양육수당 인상에 대한 선호 변화

2017년과 2018년의 설문조사에 모두 응답한 335가구를 대상으로 보육정책 개정에 관한 선호 변화와 이에 따른 가구 특성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2017년 1차 조사에서 보육정책 개정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대해 가정양육수당 인상을 1순위로 꼽은 95가구 중 86가구(90.6%)는 2018년 2차 조사에서도 가정양육수당 인상안에 긍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나머지 9가구는 2차 조사에서 가정양육수당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1차 조사 때와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표 6-14〉 가정양육수당 인상(2017년 1순위 응답 가구 기준)

(단위: 가구, %)

구분	빈도	비율	누적 비율
매우 부정	0	0.0	0.0
부정	9	9.5	9.5
긍정	45	47.4	56.8
매우 긍정	41	43.2	100.0
계	95	100.0	

다음 표들은 가정양육수당 인상에 대한 선호가 유지 또는 변화한 가구들을 다양한 특성별로 요약한 것이다. 먼저 양육 행태 분포에 대해 살펴보면, 경우에 관계없이 2017년에 비해 2018년 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매우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그중 하나로 많은 가구들이 가정양육수당의 혜택이 어린이집 이용에 비해 낮다고 인식하여, 양육 방식을 가정양육에서 어린이집 이용으로 전환하였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표 6-15〉 가정양육수당 인상에 대한 선호 변화와 양육 행태 분포의 변화(2017년 1순위 응답 가구 기준)

(단위: 가구, %)

2017년 우선순위 1위	2018년 선호	양육 행태		
		보육 vs. 가정양육	2017년	2018년
가정양육수당 인상 (95가구)	유지 (86 가구)	어린이집 이용	23 (26.7)	62 (72.1)
		가정양육	63 (73.3)	24 (27.9)
		소계	86 (100.0)	86 (100.0)
	부정 (9 가구)	어린이집 이용	2 (22.2)	6 (66.7)
		가정양육	7 (77.8)	3 (33.3)
		소계	9 (100.0)	9 (100.0)

다음으로 자녀 수 분포에 관하여 살펴보면, 가정양육수당 인상을 여전히 선호하고 있는 86가구의 경우,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이 1차 조사 때에 비해 증가하였다. 자녀 수가 많아짐에 따라 양육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여 자연스럽게 가정양육수당 인상을 더 원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가정양육수당 인상에 대한 선호가 부정적으로 바뀐 9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녀 수가 적게 나타났다.

〈표 6-16〉 가정양육수당 인상에 대한 선호 변화와 자녀 수 분포의 변화(2017년 1순위 응답 가구 기준)

(단위: 가구, %)

2017년 우선순위 1위	2018년 선호	자녀 수 분포		
		자녀 수(명)	2017년	2018년
가정양육수당 인상 (95가구)	유지 (86가구)	1	38 (44.2)	31 (36.1)
		2	40 (46.5)	42 (48.8)
		3	8 (9.3)	12 (14.0)
		4	-	1 (1.2)
		소계	86 (100.0)	86 (100.0)
	부정 (9가구)	1	4 (44.4)	1 (11.1)
		2	3 (33.3)	6 (66.7)
		3	2 (22.2)	2 (22.2)
		4	-	-
		소계	9 (100.0)	9 (100.0)

다음으로 소득 수준을 보면, 가정양육수당 인상에 대해 여전히 긍정적인 86가구는 1차 조사 때에 비해 고소득 가구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가정양육수당 인상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뀐 9가구는 1차 조사 때에 비해 중소득 가구 비율이 더 많이 증가하였다. 위의 결과와 같이 보았을 때 소득 수준이 높더라도 자녀 수가 많을 경우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또한 크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6-17〉 가정양육수당 인상에 대한 선호 변화와 소득 분포의 변화(2017년 1순위 응답 가구 기준)

(단위: 가구, %)

2017년 우선순위 1위	2018년 선호	소득 분포		
		소득 구간(만 원)	2017년	2018년
가정양육수당 인상 (95가구)	유지 (86가구)	199 이하	3 (3.5)	1 (1.2)
		200~299	19 (22.1)	16 (18.8)
		300~399	30 (34.9)	24 (28.2)
		400~499	16 (18.6)	24 (28.2)
		500~799	14 (16.3)	13 (15.3)
		800 이상	4 (4.7)	7 (8.2)
		소계	86 (100.0)	85 (100.0)
	부정 (9가구)	199 이하	0 (0.0)	0 (0.0)
		200~299	3 (33.3)	2 (22.2)
		300~399	2 (22.2)	3 (33.3)
		400~499	1 (11.1)	2 (22.2)
		500~799	3 (33.3)	1 (11.1)
		800 이상	0 (0.0)	1 (11.1)
		소계	9 (100.0)	9 (100.0)

주: 2018년 소득 미응답에 따른 결측치 1개 발생.

다음으로 가정양육수당 인상에 대한 선호 변화와 소득 유형 분포의 변화에 관해 살펴본 결과,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 유형 분포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양육수당 인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한 86가구의 경우 맞벌이 비율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그 차이는 미미했다.

〈표 6-18〉 가정양육수당 인상에 대한 선호 변화와 소득 유형 분포의 변화(2017년 1순위 응답 가구 기준)

(단위: 가구, %)

2017년 우선순위 1위	2018년 선호	소득 유형 분포		
		소득 유형	2017년	2018년
가정양육수당 인상 (95가구)	유지 (86가구)	맞벌이	34 (39.5)	36 (41.9)
		아빠 외벌이	52 (60.5)	48 (55.8)
		엄마 외벌이	-	2 (2.3)
		부모 무직	-	-
		소계	86 (100.0)	86 (100.0)
	부정 (9가구)	맞벌이	4 (44.4)	4 (44.4)
		아빠 외벌이	5 (55.6)	5 (55.6)
		엄마 외벌이	-	-
		부모 무직	-	-
		소계	9 (100.0)	9 (100.0)

나. 육아휴직자 어린이집 이용 제한에 대한 선호 변화

1차 조사에서 육아휴직자 어린이집 이용 제한을 개정 1순위로 꼽은 37 가구 중 15가구가 2차 조사에서도 그 태도를 유지하였고, 나머지 22가구는 이용 제한에 대해 부정적으로 태도를 바꾼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육아휴직자 어린이집 이용 제한에 대해서는 가장 큰 태도 변화가 나타났다.

〈표 6-19〉 육아휴직자 어린이집 이용 제한(2017년 1순위 응답 가구 기준)

(단위: 가구, %)

구분	빈도	비율	누적 비율
매우 부정	11	29.7	29.7
부정	11	29.7	59.5
긍정	12	32.4	91.9
매우 긍정	3	8.1	100.0
계	37	100.0	

육아휴직자 어린이집 이용 제한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달라진 이유를 보기 위하여 우선 양육 행태 변화를 확인해 보았다. 먼저 육아휴직자 어린이집 이용 제한에 대해 여전히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15가구의 경우, 1차 조사 때에 비해 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40.0%에서 86.7%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태도가 부정적으로 바뀐 22가구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1차 조사 때 50.0%에서 2차 조사 때에는 77.3%로 역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이집 이용 경험을 통해 그 효용을 느낀 사람들 사이에서 육아휴직자의 어린이집 이용 제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6-20〉 육아휴직자 어린이집 이용 제한에 대한 선호 변화와 양육 행태 분포의 변화
(2017년 1순위 응답 가구 기준)

(단위: 가구, %)

2017년 우선순위 1위	2018년 선호	양육 행태		
		보육 vs. 가정양육	2017년	2018년
육아휴직자 어린이집 이용 제한 (37가구)	유지 (15가구)	어린이집 이용	6 (40.0)	13 (86.7)
		가정양육	9 (60.0)	2 (13.3)
		소계	15 (100.0)	15 (100.0)
	부정 (22가구)	어린이집 이용	11 (50.0)	17 (77.3)
		가정양육	11 (50.0)	5 (22.7)
		소계	22 (100.0)	22 (100.0)

다음으로 육아휴직자 어린이집 이용 제한에 대한 선호도의 변화 여부에 관계없이 자녀 수 분포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육아휴직자 어린이집 이용 제한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바뀐 22가구는, 긍정적 태도를 유지한 15가구에 비해 대체로 자녀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1〉 육아휴직자 어린이집 이용 제한에 대한 선호 변화와 자녀 수 분포의 변화
(2017년 1순위 응답 가구 기준)

(단위: 가구, %)

2017년 우선순위 1위	2018년 선호	자녀 수 분포		
		자녀 수(명)	2017	2018
육아휴직자 어린이집 이용 제한 (37가구)	유지 (15가구)	1	7 (46.7)	6 (40.0)
		2	7 (46.7)	8 (53.3)
		3	1 (6.7)	1 (6.7)
		4	-	-
		소계	15 (100.0)	15 (100.0)
	부정 (22가구)	1	12 (54.6)	10 (45.5)
		2	10 (45.5)	11 (50.0)
		3	0 (0.0)	1 (4.6)
		4	-	-
		소계	22 (100.0)	22 (100.0)

육아휴직자 어린이집 이용 제한 개정에 대한 태도 변화 여부와 관계없이 고소득 가구 비중은 증가하였다. 이는 부모들의 연령효과와 명목임금 인상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육아휴직자 어린이집 이용 제한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바뀐 22가구의 경우, 긍정적 태도를 유지한 15가구에 비해 고소득 가구 비율이 더 많이 증가하였다. 이는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맞벌이 비율이 높고 육아휴직자 어린이집 이용 제한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 변화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6-22〉 육아휴직자 어린이집 이용 제한에 대한 선호 변화와 소득 분포의 변화(2017년 1순위 응답 가구 기준)

(단위: 가구, %)

2017년 우선순위 1위	2018년 선호	소득 분포		
		소득 구간(만 원)	2017년	2018년
육아휴직자 어린이집 이용 제한 (37가구)	유지 (15가구)	199 이하	1 (6.7)	1 (6.7)
		200~299	6 (40.0)	3 (20.0)
		300~399	3 (20.0)	3 (20.0)
		400~499	3 (20.0)	3 (20.0)
		500~799	2 (13.3)	5 (33.3)
		800 이상	0 (0.0)	0 (0.0)
		소계	15 (100.0)	15 (100.0)
	부정 (22가구)	199 이하	1 (4.6)	0 (0.0)
		200~299	1 (4.6)	1 (4.6)
		300~399	6 (27.3)	5 (22.7)
		400~499	7 (31.8)	6 (27.3)
		500~799	6 (27.3)	8 (36.4)
		800 이상	1 (4.6)	2 (9.1)
		소계	22 (100.0)	22 (100.0)

다음 표는 육아휴직자 어린이집 이용 제한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바뀐 9가구의 맞벌이 가구 비율이, 긍정적 태도를 유지한 가구들에 비해 대체로 높은 것을 보여 준다.

〈표 6-23〉 육아휴직자 어린이집 이용 제한에 대한 선호 변화와 소득 유형 분포의 변화
(2017년 1순위 응답 가구 기준)

(단위: 가구, %)

2017년 우선순위 1위	2018년 선호	소득 유형 분포		
		소득 유형	2017년	2018년
육아휴직자 어린이집 이용 제한 (37가구)	유지 (15가구)	맞벌이	4 (26.7)	8 (53.3)
		아빠 외벌이	10 (66.7)	7 (46.7)
		엄마 외벌이	-	-
		부모 무직	1 (6.7)	-
		소계	15 (100.0)	15 (100.0)
	부정 (22가구)	맞벌이	13 (59.1)	13 (59.1)
		아빠 외벌이	8 (36.4)	9 (40.9)
		엄마 외벌이	-	-
		부모 무직	1 (4.6)	-
		소계	22 (100.0)	22 (100.0)

다. 부모에게 시설보육료를 직접 지급하는 것에 대한 선호 변화

1차 조사에서 시설보육료를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최우선적인 개정안으로 꼽은 96가구 중 2차 조사에서 그 태도를 유지한 가구는 80가구(83.4%), 태도가 부정적으로 바뀐 가구는 16가구(16.6%)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4〉 부모에게 시설보육료 직접 지급(2017년 1순위 응답 가구 기준)

(단위: 가구, %)

구분	빈도	비율	누적 비율
매우 부정	1	1.0	1.0
부정	15	15.6	16.7
긍정	35	36.5	53.1
매우 긍정	45	46.9	100.0
계	96	100.0	

시설보육료를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안에 대한 선호가 유지되었든 바뀌었던 관계없이, 두 경우 모두 어린이집 이용률이 2017년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다. 또한 부모에게 보육료를 직접 지급하는 것에 대해 긍정 태도를 유지한 가구들의 어린이집 이용률도, 태도가 부정적으로 바뀐 가구들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즉, 어린이집 이용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의 선택권 확대에 대한 요구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표 6-25〉 부모에게 시설보육료를 직접 지급하는 것에 대한 선호 변화와 양육 행태 분포의 변화(2017년 1순위 응답 가구 기준)

(단위: 가구, %)

2017년 우선순위 1위	2018년 선호	양육 행태		
		보육 vs. 가정양육	2017년	2018년
시설보육료 직접 지급 (96가구)	유지 (80가구)	어린이집 이용	29 (36.3)	56 (70.0)
		가정양육	51 (63.8)	24 (30.0)
		소계	80 (100.0)	80 (100.0)
	부정 (16가구)	어린이집 이용	5 (31.3)	11 (68.8)
		가정양육	11 (68.8)	5 (31.3)
		소계	16 (100.0)	16 (100.0)

자녀 수 분포의 변화를 살펴보면, 시설보육료 직접 지급 안에 대한 선호 여부와 관계없이 자연적으로 자녀 수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안에 대해 여전히 긍정적 태도를 보인 80가구의 경우, 자녀 수가 1~2명인 가구의 비율이 91.3%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이 안에 대한 선호가 부정적으로 바뀐 16가구의 경우, 자녀 수가 1~2명인 가구의 비율이 62.6%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3명인 가구의 비율이 37.5%로 높게 나타났다.

〈표 6-26〉 시설보육료 직접 지급에 대한 선호 변화와 자녀 수 분포의 변화(2017년 1 순위 응답 가구 기준)

(단위: 가구, %)

2017년 우선순위 1위	2018년 선호	자녀 수 분포		
		자녀 수(명)	2017년	2018년
시설보육료 직접 지급 (96가구)	유지 (80가구)	1	39 (48.8)	30 (37.5)
		2	34 (42.5)	43 (53.8)
		3	7 (8.8)	7 (8.8)
		4	-	-
		소계	80 (100.0)	80 (100.0)
	부정 (16가구)	1	6 (37.5)	3 (18.8)
		2	6 (37.5)	7 (43.8)
		3	4 (25.0)	6 (37.5)
		4	-	-
		소계	16 (100.0)	16 (100.0)

다음으로 소득 분포의 변화를 살펴보면, 부모에게 시설보육료를 직접 지급하는 안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한 80가구의 경우, 300만~399만 원대의 중소득 구간 가구 비율이 증가하고, 200만~299만 원대의 저소득 가구와 500만~799만 원대의 고소득 가구 비율이 소폭 감소하였다. 반면, 직접 지급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로 바뀐 16가구의 경우, 300만 원 미만의 저소득 가구 비율이 줄고, 300만 원 이상의 중·고소득 가구 비율이 증가하였다. 선호를 유지한 가구와 태도를 바꾼 가구 간 소득 분포를 비교해 보면, 유지 가구들에서 저소득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태도를 바꾼 가구들에서 고소득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표 6-27〉 시설보육료 직접 지급에 대한 선호 변화와 소득 분포의 변화(2017년 1순위 응답 가구 기준)

(단위: 가구, %)

2017년 우선순위 1위	2018년 선호	소득 분포		
		소득 구간(만 원)	2017년	2018년
시설보육료 직접 지급 (96가구)	유지 (80가구)	199 이하	2 (2.5)	3 (3.8)
		200~299	16 (20.0)	12 (15.0)
		300~399	21 (26.3)	26 (32.5)
		400~499	14 (17.5)	14 (17.5)
		500~799	23 (28.8)	20 (25.0)
		800 이상	4 (5.0)	5 (6.3)
		소계	80 (100.0)	80 (100.0)
	부정 (16가구)	199 이하	3 (18.8)	0 (0.0)
		200~299	6 (37.5)	4 (25.0)
		300~399	0 (0.0)	2 (12.5)
		400~499	2 (12.5)	3 (18.8)
		500~799	4 (25.0)	6 (37.5)
		800 이상	1 (6.3)	1 (6.3)
		소계	16 (100.0)	16 (100.0)

부모에게 시설보육료를 직접 지급하는 안에 대한 태도 변화 여부와 관계없이, 1차 조사 때에 비해 맞벌이 가구 비율은 증가하고, (아빠)외벌이 가구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긍정적 태도를 유지한 80가구의 맞벌이 비율이 부정적 태도로 바뀐 16가구의 그것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114 아동수당 지급에 따른 영유아 보육서비스 이용 행태 분석

〈표 6-28〉 시설보육료 직접 지급에 대한 선호 변화와 소득 유형 분포의 변화(2017년 1순위 응답 가구 기준)

(단위: 가구, %)

2017년 우선순위 1위	2018년 선호	소득 유형 분포		
		소득 유형	2017년	2018년
시설보육료 직접 지급 (96가구)	유지 (80가구)	맞벌이	29 (36.3)	34 (42.5)
		아빠 외벌이	51 (63.8)	45 (56.3)
		엄마 외벌이	-	1 (1.3)
		부모 무직	-	-
		소계	80 (100.0)	80 (100.0)
	부정 (16가구)	맞벌이	5 (31.3)	6 (37.5)
		아빠 외벌이	10 (62.5)	10 (62.5)
		엄마 외벌이	-	-
		부모 무직	1 (6.3)	-
		소계	16 (100.0)	16 (100.0)

제4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이상의 아동수당 신청 부모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18년 만 0~5세 자녀 양육 가구들은 대체로 아동수당제도의 필요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아동수당제도에 대한 부모들의 지지는 동 제도의 다양한 정책 기능에서 비롯될 수 있을 것이지만 본 연구의 조사에서는 자녀 양육 부담 완화와 미래 세대에 대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아동수당 도입 전에 비해 실제 수당을 수급한 이후 부모들의 체감 효과가 기대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녀 출산과 양육 부담의 사회화와 관련해서는 아동수당제도의 기능이 다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동 제도 시행 직후에 이루어진 설문결과라는 사실을 고려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는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연령이 0-5세로 일시적 지원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녀 출산과 돌봄·양육지원 정책의 적절성 측면에서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한편, 본 연구의 핵심 과제인 부모들의 자녀 양육 방식에 대한 아동수당제도와 보육 지원 체계의 복합 작용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조사된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동수당 수급이 자녀 양육 방식 선택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 방식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정책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된 가정양육수당 지원 단가 체계와 맞물려 영아기 불필요한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문턱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도 확인되었다.

이는 정부의 재정 운용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데, 관련하여 구체적인 비용을 추정해보고자 하였다. 기본적인 시산 방법은 2017년 선행연구에서 제도 도입 전 양육 방식 전환 의사에 대한

사전 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계산한 전환 비율과 통계청 인구전망에 근거하여 재정 효과를 산출한 방식을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선행연구와 방법론상의 차이는 없으며, 시산 결과의 직접 비교가 가능하도록 모든 가정과 기초 변수를 동일하게 유지하되, 전환 비율은 상기 <표 6-5>의 2018년도 조사 전체 가구 기준 연령별 비율을 사용하였다.⁸⁾ 또한 연령별 가정양육 수당과 연령별 종일반/맞춤반 부모/기본보육료, 맞춤반 긴급보육바우처, 누리과정 지원 및 방과후 지원 단가는 2019년 기준으로 조정하였다.

<표 6-29> 2019년도 시설 기반 보육·교육 및 가정양육 지원 단가 비교

(단위: 만 원/월)

구분	가정 내 보육	시설 기반 보육(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B/A	C/A	
	가정양육 수당 (A)	종일반(B)		맞춤반(C)					
		부모보육료	기본보육료	부모보육료	기본보육료	긴급보육바우처			
0세	20	45.4	48.5	35.4	48.5	6	4.7	4.5	
1세	15	40.0	26.4	31.1	26.4	6	4.4	4.2	
2세	10	33.1	17.9	25.8	17.9	6	5.1	5.0	
3~5세 누리과정	10	22 (+방과 후 과정비 7)						2.9	

- 주: 1) 기본보육료: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만 0~2세 및 장애 아동 보육 시에 지원
 2) 긴급보육바우처: 맞춤반 아동이 주어진 보육시간 외에 추가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용 (15시간 지원)
 3) 누리 과정은 사립유치원/어린이집 지원액을 기준(국공립유치원의 경우 월 6만 원, 방과후과정비 5만 원)

자료: 보건복지부(2019), 교육부(2018)를 바탕으로 작성.

아동수당제도 시행 이후 자녀 양육 방식 전환을 고려한 비용 추계의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8) 본문에서는 중복을 우려하여 별도의 설명을 생략한다. 구체적인 시산 방법과 가정에 대해서는 고제이, 고경표(2017, pp. 109-112)를 참조하기 바란다.

〈표 6-30〉 2017년도 전환 비용 추계 결과(아동수당 10 도입, 만 0~5세 국비+지방비 합계)

(단위: 억 원)

연도	양육 수당	종일반		맞춤반			누리 과정	현행 0~5세 보육·교육 지원	
		부모 보육료	기본 보육료	부모 보육료	기본 보육료	간급보육 바우처		계	(누리과정 포함)
2019	14,714	21,045	11,552	7,207	4,951	1,088	32,188	60,558	(92,745)
2020	14,673	20,972	11,513	7,182	4,934	1,084	32,191	60,360	(92,551)
2021	14,639	20,908	11,480	7,160	4,920	1,081	32,194	60,189	(92,383)
2022	14,610	20,857	11,454	7,143	4,909	1,078	32,140	60,051	(92,191)

(계속)

아동수당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전환 비용			아동수당 도입 후 0~5세 지원	
	양육수당 증감	보육료 증감	순비용	계	(누리과정 포함)
32,570	-629	2,690	2,061	95,189	(127,376)
32,517	-627	2,681	2,055	94,931	(127,123)
32,471	-625	2,675	2,050	94,709	(126,903)
32,406	-624	2,670	2,046	94,503	(126,644)

주: 0~5세 지원 규모만 합산, 국비+지방비 총액 기준.

자료: 고제이, 고경표(2017, p. 112). 〈표5-5〉의 2019년 이후 결과

(2018년도 전환을 적용 결과, 2017년도 보육료 지원 단가 적용)

아동수당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전환 비용			아동수당 도입 후 0~5세 지원	
	양육수당 증감	보육료 증감	순비용	계	(누리과정 포함)
32,570	-556	2,273	1,716	94,844	(127,032)
32,517	-555	2,266	1,711	94,588	(126,779)
32,471	-553	2,261	1,708	94,368	(126,562)
32,406	-553	2,257	1,705	94,162	(126,302)

주: 통계청 장래인구전망(중위) 기준, 0~5세 지원 금액만 합산, 총액(국비와 지방비) 기준.

(2018년도 전환을 적용 결과, 2019년도 보육료 지원 단가 적용)

아동수당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전환 비용			아동수당 도입 후 0~5세 지원	
	양육수당 증감	보육료 증감	순비용	계	(누리과정 포함)
32,570	-556	2,569	2,012	95,140	(127,328)
32,517	-555	2,561	2,006	94,883	(127,074)
32,471	-553	2,555	2,002	94,662	(126,856)
32,406	-553	2,551	1,999	94,456	(126,596)

주: 통계청 장래인구전망(중위) 기준, 0~5세 지원 금액만 합산, 총액(국비와 지방비) 기준.

〈표 6-30〉의 상단은 2017년도의 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계산한 자녀 양육 방식 전환에 따른 순 비용으로, 2018년도 실제 아동수당제도 시행 후 수급 가구의 전환 비율을 고려한 비용 추계 결과와 비교하여 보여준다. 영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데 따른 추가적인 보육료 지원 비용은 전환 비율에 기초할 경우 1,700억 원 수준으로 이전 결과에 비해 낮아지지만,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 단가 격차 확대로 인하여 상쇄되어 추가적인 보육재정 소요는 2,000억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계되었다.

실제로 2017년도와 2019년도의 가정양육과 보육료 지원 단가 격차는 영아 종일반을 기준으로 연령별로 각각 4.1배→4.7배, 3.8배→4.4배, 4.4배→5.1배로 확대되었다.⁹⁾ 이러한 비용 추계 결과는 가정양육과 시설 보육으로 구분되어 차등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 보육 지원 체계에 대한 조정 없이 아동수당제도가 도입되면서, 정책이 추구하는 이념과 목적의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정책 집단에 중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정책적으로 불합리한 의사결정을 유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전환 의사에 대한 분석 결과, 저소득층에서 가정양육으로 전환하거나 유지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반면에, 고소득층의 경우 보육시설로 전환하거나 유지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확인된 사실은 관련 제도들 간의 적절한 조율이 시급함을 강조한다.

제도 간의 조율 방안 검토와 관련하여 현행 보육 체계에 필요한 개선 과제를 확인한 결과 가정양육수당 인상과 현재 공급자에게 지급되는 보육료 지원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가 지난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선진국 사례와 같이 육아

9) 2019년도 0~2세반 보육료 지원 단가는 2018년 대비 부모보육료 30%, 기본보육료는 10.9% 인상되었다(보건복지부, 2018. 8. 27.).

휴직자에 대한 보육시설 이용 제한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는데, 이는 고용보험 가입과 이용의 사각지대가 크고 소득대체율이 낮은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가정양육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가정양육수당 단가 인상에 관한 설문 결과, 자녀 양육 시간에 대한 기회 비용이 큰 맞벌이 가구와 같이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에서의 요구하는 인상금액이 높게 나타났다. 즉, 가정양육수당 인상 금액 수준에 따라 반응하는 가구의 특성집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으로 그 결과 노동 공급이나 아동 발달 등 다차원적인 측면에서의 중장기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체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아동수당제도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지급 연령과 금액의 확대를 중요한 개선 과제로 여기고 있으며, 자녀 출산과 관련한 유인 체계를 부가한다면, 자녀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급여 체계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반적으로 조사 가구들의 아동수당제도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동시에 몇 가지 보완점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보육서비스의 이용 행태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아동수당제도는 물론 가정양육수당-보육료 지원 단가 체계의 조정이나 보육료 지원 대상의 변화 등과 같은 보육 체계 전반에 걸친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별개의 정책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라 하여도 동일한 정책 집단에 각각의 영향을 미칠 때, 하나의 제도 또는 제도들에 대한 조정에 있어서는 개별 제도의 효과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영향까지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설문조사에 근거한 단편적인 분석을 통해서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과제로서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실증자료의 확보와 다차원적인 영향 경로를 고려한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되는 것으로 지속적인 연구 노력과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사안이다.



참고문헌 <<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에서 2019. 1. 1. 인출.
- 고제이, 고경표. (2017).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아동수당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고제이, 신윤정, 강신욱, 오미애, 안형석. (2015). 영유아 적정 가정양육비용 산출을 위한 통계분석.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교육부. (2018. 2. 2.). 2018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안내.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12&boardSeq=73206&lev=0&searchType=null&statusYN=C&page=1&s=moem&m=0301&opType=N>에서 2018. 12.15. 인출.
- 김송이, 이혜숙. (2014). 양육수당 도입 이후 보육수요 실태 및 보육인프라 다각화 방안.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보건복지부. (2009).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_____. (2010).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_____. (2011).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_____. (2012).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_____. (2013).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_____. (2014).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_____. (2015).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_____. (2016).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_____. (2017).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_____. (2018).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_____. (2019).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8. 8. 27.). 사람 중심의 포용적 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19년 복지부 예산 편성.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ls.jsp?PAR_MENU_ID=04&MENU_ID=0403에서 2018. 12. 15. 인출.

- 서문희, 이혜민. (2013). 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www.idolbom.go.kr에서 2019. 1. 1. 인출.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6078호. (2018. 12. 24., 일부개정.)
유해미, 강은진, 조아라. (2015). 2015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 (2018). 2017 유아교육 보육 주요통계. 육아정책연구소.
이채정. (2017). 영유아양육지원정책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EC. EURYDICE

https://eacea.ec.europa.eu/national-policies/eurydice/national-description_en에서 2019. 3. 30. 인출

MISSOC. (2018). Mutual Information System for Social Protection (MISSOC) Comparative Table Database (selected update: 2018-1-1),
<http://www.missoc.org/missoc-database/comparative-tables>에서 2018. 10. 3. 인출.

OECD. (2018). OECD Family Database.

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에서 2018. 10. 15. 인출.

부록 1. 회귀분석을 이용한 아동수당 도입 효과 분석 결과

〈부표 1-1〉 아동수당 도입 효과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구분	자녀 양육 방식			양육비용 부담 완화			출산율 제고		
	OLS	FE	FLO	OLS	FE	FLO	OLS	FE	FLO
독립변수									
아동수당 시행 (2018년 터미)	0.001 (0.031)	0.008 (0.066)	-0.180 (0.621)	0.149 (0.047)	0.250 (0.090)	1.439 (0.564)	-0.180 (0.038)	-0.200 (0.074)	-2.643 (0.751)
자녀 연령	-0.029 (0.013)	-0.051 (0.039)	-0.251 (0.379)	-0.027 (0.020)	-0.088 (0.053)	-0.563 (0.331)	-0.014 (0.016)	0.057 (0.044)	0.623 (0.418)
자녀 출생 순위	0.033 (0.039)	-0.026 (0.104)	0.292 (1.064)	0.117 (0.058)	-0.104 (0.140)	-0.883 (1.050)	0.003 (0.047)	0.188 (0.115)	1.241 (0.951)
가구원 수	-0.025 (0.034)	0.057 (0.068)	0.160 (0.675)	-0.061 (0.050)	-0.039 (0.092)	-0.315 (0.629)	-0.017 (0.041)	-0.032 (0.075)	0.321 (0.787)
맞벌이 여부	-0.154 (0.155)	-0.270 (0.225)	-18.683 (.)	0.308 (0.231)	0.458 (0.304)	20.029 (.)	-0.088 (0.187)	-0.117 (0.249)	0.139 (1.745)
외벌이 여부	-0.216 (0.151)	-0.341 (0.214)	-19.534 (0.654)	0.266 (0.226)	0.477 (0.289)	20.006 (0.433)	-0.116 (0.183)	-0.084 (0.237)	0.101 (1.650)
가구소득	-0.038 (0.012)	-0.022 (0.027)	-0.343 (0.306)	0.001 (0.018)	0.037 (0.036)	0.116 (0.208)	-0.016 (0.015)	-0.014 (0.030)	-0.132 (0.256)
양육비 지출비용	0.004 (0.008)	-0.013 (0.014)	-0.150 (0.135)	-0.021 (0.012)	0.001 (0.019)	0.076 (0.106)	0.015 (0.010)	0.014 (0.016)	0.061 (0.143)
상수항	0.517 (0.173)	0.438 (0.314)		0.315 (0.258)	0.255 (0.425)		0.489 (0.209)	0.167 (0.348)	
n	667	667	144	667	667	272	667	667	198

주: 각 종속변수별로 3가지 모형을 가정하고 각각에 대해 적절한 추정량을 이용한 분석 결과를 제시 하였음. OLS는 일반적인 회귀모형이며 패널 개체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가장 단순한 모형임. FE는 가구 간 이질성을 고정효과로 간주한 모형임. FLO는 이항 반응 변수를 적절히 모형화한 것으로 가구 간 이질성은 고정효과로 간주하였고, 오차항이 로지스틱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 모형임.

부록 2. 한국의 휴직제도와 돌봄·보육 지원 제도 현황

1.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대상

가.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 자격을 갖기 위한 주요 요건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다. 즉, 출산전후휴가의 자격은 휴가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임신 상태의 여성에게 주어진다. 휴가 기간은 출산 전후를 합쳐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을 제공하며, 출산 후 반드시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을 휴직 기간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출산전후휴가의 급여는 기업 규모별로 상이한데, 먼저 중소기업은 유급기간을 포함한 90일 전체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제공하고 있다. 대기업은 30일 무급기간에 대해서만 지원하는데,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통상임금 간 차이는 180만원을 상한으로 사업주가 지급한다. 한편, 공무원의 출산전후휴가는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하며, 급여는 공무원연금에서 지급된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에서 2019. 1. 1. 인출).

나. 육아휴직제도

다음으로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살펴보자. 육아휴직의 자격 조건도 출산전후휴가와 동일하다(휴직 개시 이전 피고용보험 단위 기간이 총 180일 이상). 그리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 한하여 최대 1년의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기간은 부와 모 각각 1년 이내이며, 급여액은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 70만 원), 잔여기간 동안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를 지원해 준다. 다만 육아휴직급여의 25%는 휴직이 종료되고 난 후 직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속 시 일괄 지급 처리된다. 그리고 부와 모가 한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휴직을 신청할 경우, 두 번째 휴직자의 첫 3개월(아빠 휴직보너스)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 원)이다.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하여 자녀 1명에 대해 각각의 부모가 3년의 휴직 기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급여는 공무원 연금에서 지급된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에서 2019. 1. 1. 인출).

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마지막으로 살펴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대상 근로자가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주당 근로시간을 15시간에서 30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는 제도이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분할·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급여액은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 원/하한액 50만 원)를 단축 전후의 근로시간 차이로 조정 한 값으로 책정한다. 구체적인 산식은 다음 표와 같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에서 2019. 1. 1. 인출).

126 아동수당 지급에 따른 영유아 보육서비스 이용 형태 분석

〈부표 2-1〉 휴직제도 현황

구분	내 용
출산 전후 휴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휴가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 휴가 기간-90일(다태아 경우 120일),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 배정 • 급여- 중소기업은 유급기간을 포함한 90일 모두 통상임금의 100%, 대기업 -30일 무급기간에 대해서만 지원(상한액 180만 원, 통상임금과 출산전후휴가 급여 차액은 사업주 지급) <p>※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의거 제공(급여는 공무원연금)</p>
육아 휴직 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조건-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 시 최대 1년 사용. 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자 • 휴가 기간-부와 모 각 1년 이내 • 급여-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하한 70만 원), 나머지 기간은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 원/하한 70만 원)를 정부에서 지원 <p>-다만, 육아휴직급여의 25%는 휴직 종료 이후 직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 시 일괄 지급</p> <p>-부와 모가 한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휴직하는 경우 두 번째 휴직자의 첫 3개월(아빠 휴직보너스)의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 원)</p> <p>※ 공무원은 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해 부모 각각 3년, 급여는 공무원연급에서 지급</p>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가 휴직 대신 주당 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단축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분할/혼합 사용할 수 있음. • 급여-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하한 50만 원)×(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 근로시간)/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자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에서 2019.1.1. 인출.

2. 보육·교육 지원

가. 보육료 지원

현재 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는 자녀의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제공되고 있다. 만 0~2세 영아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 시간에 따라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나뉜다. 종일반은 취업 가정, 구직 가정, 다자녀 가정, 조손가정 등을 대상으로 7:30~19:30까지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맞춤형은 종일반 이외 가정을 대상으로 무상 보육서비스를 9시에서 15시까지 제공하는 동시에, 긴급한 사유로 보육시설을 이용해야 할 경우 긴급보육바우처라는 이름으로 월 15시간 추가적인 어린이집 이용권을 제공한다. 만 3~5세 유아의 경우,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루 동안(7:30~19:30) 어린이집 이용권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보건복지부, 2019).

나.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같은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초등학교에 취학하지 않은 만 84개월 미만 아동을 자녀로 둔 가구에 지급되는 수당이다. 유치원과 교과과정 성격이 동일한 국립학교 인가 기관(교육부 유치원과는 다름)에 재원하면서 교육비 지원을 받는 아동의 경우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의 경우, 90일이 속하는 당월까지만 지급하고 익월부터는 가정양육수당 지급이 중지된다(2015. 9. 19. 시행). 한편, 누리과정 지원 기간이 3년을 초과한 아동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경우 보육료나 유아 학비를 지원받을 수는 없지만,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이 가능하다(보건복지부, 2019).

급여액은 가구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급되나 연령별로 차등 지급되고 있다(<부표 2-2> 참조).

〈부표 2-2〉 가정양육수당 지원 연혁(2009년~현재)

연도	소득 기준	연령(만)	지원 단가(월)
2009-2010	차상위 이하: 최저생계비 120% 이하	0~1세	10만 원
2011	차상위 이하: 월 가구소득(4인 기준) 173만 원 이하	0~2세	0세: 20만 원 1세: 15만 원 2세: 10만 원
2012	차상위 이하: 월 가구소득 (4인 기준) 180만 원 이하	0~2세	0세: 20만 원 1세: 15만 원 2세: 10만 원
	농어촌 아동: 농가소득 1자녀 기준 연간 4000만 원 미만 (농지 5만 제곱미터 이하)	0세~취학 전 (최대 84개월)	연령별 보육료 지원 단가의 45%
	장애 아동: 소득/장애등급 무관	0세~취학 전 (최대 84개월)	0~2세: 20만 원 3세 이상: 10만 원
2013~현재	전 소득계층	0세~취학 전 (최대 84개월)	0세: 20만 원 1세: 15만 원 2세: 10만 원 3세 이상: 10만 원 - 농어촌 아동 0세: 20만 원 1세: 17.7만 원 2세: 15.6만 원 3세: 12.9만 원 4세 이상: 10만 원 - 장애 아동 0~2세: 20만 원 3세 이상: 10만 원

자료: 보건복지부(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다. 시간제 보육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전술한 가정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아동이 지정된 기관에서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기본형과 맞벌이형으로 구분된다. 맞벌이형은 가정양육수당 수급자 중 시간제 근로 중인 맞벌이 가구, 취업 중

인 한부모가구, 기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월 80시간의 시간제 보육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이다. 기본형은 맞벌이형 이외의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월 40시간의 시간제 보육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이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의 이용료는 시간당 4,000원인데, 이용자 부담은 기본형 2,000원, 맞벌이형 1,000원이다(보건복지부, 2019).

라.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 돌보미가 만 1세 이하 자녀를 가진 맞벌이 가구를 방문하여 자녀를 안전하게 돌봐 주는 서비스이다. 이용 시간 유형에 따라 종일제와 시간제로 구분된다. 종일제는 보다 세부적으로 영아 종일제와 보육 교사형으로 나뉘며, 시간제는 일반형과 종합형으로 나뉜다(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www.idolbom.go.kr에서 2019. 1. 1. 인출).

먼저 종일제 서비스는 회당 4시간 이상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주로 만 3개월 이상 만 35개월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아 주기, 목욕 등 전반적으로 영아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반해 시간제 서비스는 부모가 올 때까지 1회 2시간 이상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주로 만 3개월 이상에서 만 12세 이하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보육, 놀이, 급·간식, 보육 관련 시설(학교 포함)의 등원 및 하원, 안전 및 신변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www.idolbom.go.kr에서 2019. 1. 1. 인출).

서비스 이용료는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다. 가구소득 수준별 차등 지원은 크게 4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60% 이하(가형), 85% 이하(나형), 120% 이하(다형), 120% 초과(라형)로 구분하여 서비스

이용료를 정부와 이용자가 차등적으로 분담하고 있다. 예컨대 라형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100%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다(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www.idolbom.go.kr에서 2019. 1. 1. 인출).

그 밖에 초등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초등 돌봄과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등이 제공되고 있다(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www.idolbom.go.kr에서 2019. 1. 1. 인출).

부록 3. 어린이집 이용/가정양육수당 수급 부모 설문조사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아동수당 수급경험이 자녀 양육에 미친 영향에 관한 경험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8년 현재 0-5세 자녀 양육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 결과는 아동수당 수급 현황 파악 및 아동수당제도 개편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본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며, 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바쁘시더라도 조사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응답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그 내용은 통계 자료로만 이용되오니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 아동수당 지급에 따른 영유아 보육서비스 이용 행태 분석

선문0. 현재 살고 계신 지역은 어디입니까?

1. 시도 ()
2. 시군구 ()
3. 읍면동 ()

선문1. 귀 가정에 어린이집을 이용 중이거나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만 0-5세 아동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명이나 있습니까?

- ① 있다(____명) ② 없다(설문 종료)

선문2. 현재 응답하시는 분은 위 아동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 ① 어머니
- ② 아버지
- ③ 기타
(☞ 부모가 아닐 경우 조사를 중단하고 다른 가구 접촉)

*가구 일반과 부모님의 경제활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 가정의 가장 어린 자녀는 몇째이며 생후 몇 개월이 되었습니까?

자녀 ()명 중 ()째,
생후 ()년 ()개월

2. 위 자녀를 어떻게 돌보고 있습니까?

- ①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다. ②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집에서 돌보고 있다.

*이하 자녀 양육과 관련한 질문은 위 자녀를 기준으로 합니다.

3. 현재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은 총 몇 명입니까?

가구원수 () 명

4. 다음의 보기에 해당하는 가구소득 유형을 선택해주시시오.

- ① 맞벌이
- ② 아빠만 일하는 외벌이
- ③ 엄마만 일하는 외벌이
- ④ 부모 모두 일을 하지 않음
- ⑤ 무응답

5. 귀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 ① 200만 원 미만
- ② 20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
- ③ 300만 원 이상 ~ 400만 원 미만
- ④ 400만 원 이상 ~ 500만 원 미만
- ⑤ 500만 원 이상 ~ 800만 원 미만
- ⑥ 800만 원 이상 ~1200만 원 미만
- ⑦ 1200만 원 이상

6. 자녀 양육비로 매월 얼마를 지출하십니까? 최연소 자녀 1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① 10만 원 미만
- ② 10만 원 이상 ~ 20만 원 미만
- ③ 20만 원 이상 ~ 30만 원 미만
- ④ 30만 원 이상 ~ 40만 원 미만
- ⑤ 40만 원 이상 ~ 50만 원 미만
- ⑥ 50만 원 이상 ~ 60만 원 미만
- ⑦ 60만 원 이상

134 아동수당 지급에 따른 영유아 보육서비스 이용 행태 분석

8-1 '불편했다' 혹은 '매우 불편했다'고 응답하신 경우, 어떠한 점 때문에 불편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 ①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 ② 아동수당 신청에 할애한 시간과 비용
- ③ 복잡한 아동수당 신청절차
- ④ 기타()

9. 아동수당을 신청하고 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 걸린 민원시간과 불편사항을 모두 포함해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얼마만큼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 _____ 원)

※ 아동수당제도와 자녀 양육 및에 관한 질문입니다.

10. 아동수당 도입이 귀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방식에 영향을 주었습니까? (어린이집 이용 또는 가정에서 양육)

① 그렇다 (☞ 질문 10-1) ② 아니다. 영향이 없다 (☞ 질문 11)

10-1. 아동수당 도입이 귀 가정의 자녀 양육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습니까?

- ① 어린이집에 계속 보낼 유인이 커졌다 (☞ 질문 10-2)
- ②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대신 집에서 아이를 돌볼 유인이 생겼다 (☞ 질문 11)

10-2. 아동수당 10만 원 지원에 추가적으로 가정양육수당을 현재보다 얼마만큼 인상할 경우 집에서 아이를 돌보시겠습니까? (아동수당 10만 원은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지원됩니다)

(♣아래 보기 금액을 한꺼번에 알려주지 않고, 단계별 의사를 확인하여 최종 기입합니다)

- ① 5만 원 인상
- ② 10만 원 인상
- ③ 15만 원 인상
- ④ 20만 원 인상
- ⑤ 25만 원 이상 인상
- ⑥ 영향 없음

11. 귀하는 아동수당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한 제도이며 긍정적으로 본다
- ② 대체로 긍정적이다
- ③ 그다지 필요한 제도라 생각하지 않는다
- ④ 매우 불필요한 제도라 생각한다

12. 다음은 아동수당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귀하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귀하가 생각하시는 바를 응답해주시시오. (점수 숫자로 기입)

구분	④매우 높음	③ 높음	② 낮음	① 매우 낮음
1) 자녀 양육부담 완화	4	3	2	1
2)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저축 등으로 인한)	4	3	2	1
3) 선별 지급으로 인한 불편과 사회 갈등 발생	4	3	2	1
4) 사회가 아이를 같이 키우는 사회 분위기 조성	4	3	2	1
5) 자녀 출산 결정 및 계획	4	3	2	1

13. 아동수당제도 및 자녀 양육 체계 개선 방향에 대한 귀하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귀하가 생각하시는 바를 응답해 주십시오 (예컨대, 1)의 경우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등)

구분	④ 매우 긍정	③ 긍정	② 부정	① 매우 부정
1)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4	3	2	1
2) 아동수당 금액 인상	4	3	2	1
3) 출생순위별 차등지급(자녀가 많을수록 더 많은 금액 지원)	4	3	2	1
4) 가정양육수당 금액 인상	4	3	2	1
5) 육아휴직자 급여 인상을 전제로 육아휴직자 어린이집 이용 제한	4	3	2	1
6) 시설로 지급되는 보육료를 부모에게 직접 지급	4	3	2	1
7) 기타	()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원종류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정기간행물회원 : 3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www.kihasa.re.kr) - 발간자료 - 간행물구독안내

▶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 | |
|---|---|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 ■ Yes24 http://www.yes24.com |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